소재·부품·장비산업 정부지원 시책

CONTENTS

Ⅰ.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성과

1.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2
2.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 6

Ⅱ. 금융지원

(1) 만기연장 및 유동성 공급확대 ···· 12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12
2.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 14
3.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 19
4.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 20
5.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26
6. 영세 관광사업자 신용보증 ···· 28

(2) 대체수입처 확보기업 등 지원 ···· 29
1. 수입처 다변화 기업 금융지원 ···· 29
2.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 32
3. 대체시장 개척지원, 해외기업 인수금융 지원 ···· 34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 36
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 36
2.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 39
3.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 42
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보증 지원 ·· 43
5.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 47
6. 연구개발 시설투자 촉진자금 지원 ····· 49
7.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지원 ····· 50
8.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 온렌딩 지원 ····· 52

Ⅲ. 세제개선 및 세정지원

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출자·인수 과세특례 ····· 54
2. 소재·부품·장비 R&D 세액공제 신설 ····· 55
3.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72
4.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 73
5. 보세구역 활용 자재비축 및 신속통관 지원 ····· 76
6.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환급 등 지원 ····· 78
7. 기업부설 연구소 지방세 감면 ····· 80
8.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 ····· 82

CONTENTS

Ⅳ.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제도

(1) 수출규제 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 84
1.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 제도 정보제공 ·· 84
2. 대체 수입처 발굴조사 및 현지활동 지원 ····· 86
3. 해외물류센터 지원 ····· 88
4. 해외기업 인수(M&A) 지원 ····· 90
5.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 92
6. 일본 ICP기업 활용 지원 ····· 94

(2) 고용지원 ····· 96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96
2. 특별연장근로 인가 ····· 99

(3) 심사 및 인허가 기간단축 ····· 101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 ····· 101
2.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Fast Track 지원 ··· 102

(4)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지원 ····· 104
1.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지원 ····· 104
2. 임대전용 산업단지 우선입주 ····· 105

Ⅴ. 기술개발 지원

1.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 108
2. 소재부품 산업 미래 성장동력 개발 ····· 110
3. 소재부품 글로벌 투자연계 기술개발사업 ····· 114
4. 소재·부품·장비 혁신Lab 기술개발사업 ····· 116
5.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 118
6.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 120
7. 과기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 121
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122
9. 강소기업 100개 육성 ····· 124
10.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125
11. 소재 종합솔루션센터 ····· 127
12. 신뢰성테스트 지원 ····· 129
13. 신뢰성 평가센터 ····· 131
14. 특허기반 기술개발 전략,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 지원 ····· 135

CONTENTS

Ⅵ.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1.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 개요 ····· 140
2.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 패키지 지원내용 ····· 142
3.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 지원 절차 ····· 150

Ⅶ. 소재·부품·장비산업 법령정비

1. 소부장 특별법 주요 내용
   (2019. 12. 31., 개정, 2020. 4. 1., 시행) ····· 158
2.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개요 ····· 164
3.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요 ····· 166

Ⅷ. 각 지자체별 지원사업

[참고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현장지원반 핫라인 ···· 233
[참고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연락처 ··· 239
[참고3] 소재·부품산업 대상 업종 ····· 240

Ⅰ.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성과

1.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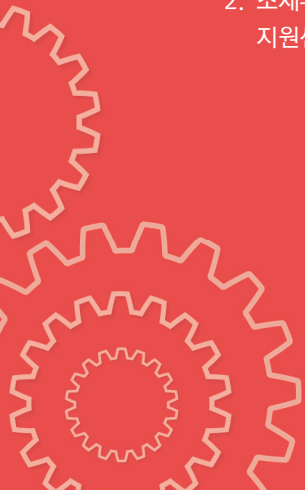

ask16707072@korea.kr

1.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경과)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 국내기업의 관련 수급 애로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설립('19.7.22)하여 원스톱 애로 해결 체제 가동

› 또한, 국가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서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19.8.5)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주요 내용]

□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
- 가용가능 예산을 R&D, M&A, 금융 등에 집중 배정하여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
- 기술개발 → 실증테스트베드 → 양산테스트베드 → 신뢰성 보증 등 全주기적 강력 연계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 범정부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 「소재 · 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하여 대상 · 범위 · 기능 · 방식 ·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하고, 일몰법을 상시법화

❶ (대상)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❷ (범위) '소재 · 부품' → '소재 · 부품 + 장비'로 확대
❸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❹ (방식) 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❺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그간의 성과

› **(국내생산능력 확충)**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설 후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소부장 국내 투자 움직임도 활발

국내공장 신설	• 솔브레인, 불산 신증설 공장 완공 • A社, 불화수소가스 신규공장 완공 • B社, 불화폴리이미드 신규공장 완공 • C社, 블랭크마스크 신규공장 완공
국내 투자	• 효성, 탄소섬유 공장 증설에 '28년까지 1조원 투자 발표('19.8.20) •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 신설에 3천억원 투자 발표('19.8.28) •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제조공장 신설에 2.5천억 원 투자 발표('19.12.13)

› **(투자유치 등)** 소부장 분야 해외기업 국내 유치, 해외 M&A 등 개방형 기술확보 사례 확대

해외기업 국내유치	• M社, 실리콘웨이퍼 생산공장 준공식 개최('19.11월) • 반도체 장비회사 L社 한국에 R&D센터 투자 확정('19.11월) • 해외 소부장 기업들의 한국 투자 관심 증가 등
해외기업 인수 등	• SK실트론, 美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발표('19.9.10) • 현대차, 美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보유)와 JV 설립 발표('19.9월)

› **(국내 신규공급망 구축)** 잠재력 있는 국내기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례 증가 등 기업 간 협력 움직임 확산

* 정밀제어부품 A사의 경우 日수출규제 이후 거래관계가 없었던 기업 124개사로부터 거래관련 연락이 왔으며, 실제 수주까지 이어진 기업은 37개사(Test-bed 연구기관 간담회, '19.11.6.)

➔ (향후계획) 소재 · 부품 · 장비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① **(R&D)** 100대 핵심품목 중심 기술개발, 실증 ·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② **(기업)** 100대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확대

→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기업으로 성장 지원

③ **(투자)** 투자펀드 조성, 소부장 연구개발 ·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등

→ 소부장 기업의 생산 · 연구활동에 충분한 자금 지원

2.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 (설립목적)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우리 기업의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 (구성) '19.7.22부터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동

› 품목, 기능(무역·금융·환경·R&D·고용), 지역 담당으로 역할 분담, 체계적 운영

* 산업부·기재부·중기부 등 11개 정부부처, KOTRA·무역보험공사·대한상의·반도체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21개 유관기관 등 32개 기관

➔ (기능)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제공, 기업 애로조사 및 지원

› 정보제공 : 관련품목, 일본 수출규제 제도, 정부 지원시책 등

› 기업 실태조사 및 애로파악 : 품목별 관련기업 수급 실태 및 애로조사

› 수급애로 지원 :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생산설비 신·증설

› 피해기업 지원 : 기업 피해 발생시 금융·세제·자금 등 신속지원

➔ (협력체계) 센터를 중심으로 업종·지역별 및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핫라인 유지 및 상시 협력

[업종 · 지역별 ·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주요 실적

❶ **(물량확보)** 對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 또는 원자재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급을 위해 특별 보증, 운전자금, 관세 등 지원

* 사례) 세라믹 분말제조 A사는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요청('19.8.3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자금 지원(19.9.17) → 양산 성공 및 2개 수요기업 납품('19.12.)

- 보세구역 활용 지원(2,522건, '19년 말 기준), 신속통관 지원(38,217백만 불, '19년 말 기준), 관세조사 유예 등 지원

❷ **(대체처 발굴)**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일본 外 대체공급선 연결(KOTRA), 전략물자관련 애로해소 및 컨설팅(업종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지원

* 사례) 일본수출규제 3대품목 관련 B사는 대체처 발굴 요청('19.8.8.) → 4개국 5개처 정보제공('19.8.21) → 3개 대체물질 테스트 중, 금년 내 고객사 공급 예정

❸ **(생산설비 확충)** 수출 규제품목 및 전략물자의 신속한 공급 안정화를 위한 고용, 환경, 관세 등 관련 행정 지원

- 159개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속처리 및 3대 수출규제품목의 경쟁력 강화 및 대체 생산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 사례) 일본수출규제 3대품목 관련 C사는 2개 공장증설에 대해 Fast-Track 신청('19.9.4.) → 확인증명서 발급('19.9.10.) → 장외영향평가 완료('19.10.7., 10.23.) → 시설가동('20.1.2.)

- 생산시설 신·증설시 발생하는 자금·입지·인프라 등 업체 요구 맞춤형 지원

  * 사례) 일본수출규제 3대품목 관련 D사의 폐수처리 시설 지원 요청

  → 지자체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건설 추진

❹ **(R&D 지원)** 핵심 품목 개발 지원을 위한 특허 컨설팅, 신뢰성 테스트, R&D 등 연구개발 지원

* 사례) 기계 부품 제조업체 E사 특허회피 설계 및 분쟁 대응 컨설팅 요청('19.8.27.) → 단기특허분석 제공('19.11.8)

❺ **(간접피해 지원)** 일본 여행 감소,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

* 사례) 금형 제조업체인 F사는 일본 수입기업의 발주 취소로 애로 제기('19.8.19.) → F사의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비 해당한다는 판정서를 발급하여 수출 재개

Ⅱ.
금융지원

(1) 만기연장 및 유동성 공급확대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2.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3.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4.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5.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6. 영세 관광사업자 신용보증

(2) 대체수입처 확보기업 등 지원
1. 수입처 다변화 기업 금융지원
2.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3. 대체시장 개척지원, 해외기업 인수금융 지원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2.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3.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보증 지원
5.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6. 연구개발 시설투자 촉진자금 지원
7.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지원
8.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 온렌딩 지원

ask16707072@korea.kr

1. 만기연장 및 유동성 공급확대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지원 대상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하 '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 대상기업')

❶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❷ 향후 수입 ·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❸ ① ·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다만,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지원내용

› 정책금융기관* 대출 ·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무보, 중진공

문의처

› 거래 금융회사 등의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신청

은행명	대표번호	홈페이지
산업은행	02) 787-4000	www.kdb.co.kr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수출입은행	02) 3779-6114	www.koreaexim.go.kr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1544-1120	www.kibo.or.kr
무역보험공사	1588-3884	www.ksure.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www.kosmes.or.kr

2.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1 기업은행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❶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 실적을 보유한 기업
❷ 향후 수입 ·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❸ ① ·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 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지원내용

- **(대출종류)** 중소기업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 **(지원한도)** 동일 기업 당 3억 원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0%p 감면
- **(대출기간)** 1년 이내(최장 3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필요서류)

대상 구분	확인서류 예시
❶ 수입·구매[주] 기업	- (수입) 수입신고필증 등 - (구매)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
❷ 수입·구매 예정기업	- Sales contract, 구매계약서 등
❸ 상기 ❶, ❷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	-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❶, ❷번 기업(거래수주기업)의 피해 품목 확인용

주) 구매기업 : 수입총판 등을 통해 수출제한 품목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업

➔ 문의처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 1566-2566

2 산업은행

지원 대상

- 산업은행 기존 거래 중소 · 중견기업 중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 지원불가 대상 : 계열대기업, 부실기업(구조조정 대상·신용등급 CC이하 등)

지원내용

- **(지원한도)** 중소 50억 원, 중견 70억 원
- **(용도 및 통화)** 운전자금, 원화 및 외화
- **(대출기간)** 1년 이내, 연내 1회
- **(유의사항)**
  - 기존에 산업은행과 거래중인 기업만 대상
  - 기한연장(만기도래 시 동 자금으로의 당행대환 포함) 불가
  - 타행대환을 위한 동 자금 사용 불가 (대출상환용도 금지)

문의처

기존 거래중인 산업은행 영업점 담당자에게 신청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❶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 중소기업
❷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 · 중견기업의 생산 차질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다만, 제조업(KSIC 10~34) 영위기업 및 1~2차 협력업체 또는 1~2차 협력업체와 거래비중 20% 이상인 기업에 한함)
❸ 최근 1년간 일본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일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
❹ (관광 · 여객운송 등 일본 주거래기업) 최근 1년간 일본관련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일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거래 피해기업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월,분기,반기,연 비교시점 적용)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 2.65%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신청기간 공고 시행일('19.12.24.)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사전상담 및 신청
- 신청기업 →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시 신청요건 확인

▼

실태조사
- 중진공 → 신청기업 실태조사
  * 수출규제 피해 여부 등 확인

▼

지원결정 및 대출
- 중진공 → 신청기업 (10영업일 이내 대출실행)

구비서류

❶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일시적 경영애로 신청서)
❷ 관세청 수입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전년도 동월 또는 신청 전전월) 등 피해 증빙이 가능한 서류

지원규모 1,000억 원 내에서 일부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부 ☎ 1357, www.kosmes.or.kr

3.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❶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 실적을 보유한 기업
❷ 향후 수입 ·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❸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 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한도)** 중소 50억 원, 중견 70억 원
› **(금리우대)** 일반기업 0.8%, 특정기업* 1.0%p 인하
* 조선 · 자동차업종, 지방소재기업,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물류, 관광, 보건,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 **(용도 및 통화)** 운전자금, 원화
› **(대출기간)** 1년 이내
› **(유의사항)** 통장식 한도성 상품 취급불가, 타행 대환 가능

문의처 산업은행 신산업금융실 ☎02-787-5624(또는 5602)

4.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1 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❶~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❶ '18.1.1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 보유(수입 예정 포함) 기업*
❷ '18.1.1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 구매(구매예정 포함) 기업*
❸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 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

* 수입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계약서, 매입(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한도 : 신보 내규에서 정하는 보증한도 이내에서 추정매출액 등의 1/2~1/4 적용
- 보증비율 : 90% 부분보증
- 보증료율 : 0.3%p 차감
- 보증기한 : 장기 5년 이내로 운용
- 만기연장 :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휴 · 폐업기업, 책임경영의무 위반 특별약정기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

➔ 지원규모 총량한도 1조 원

➔ 운용기간 프로그램 시행일('19.8.6.)부터 '20년말 까지 (필요시 연장)

➔ 신청방법 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 신청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2 기술보증기금

지원 대상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❶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 실적을 보유한 기업
❷ 향후 수입 ·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❸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 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지원내용

① 기존보증 :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② 신규보증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사항 : 보증비율(90%), 보증료감면(0.3%p), 심사기준완화, 전결권 완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우대: 같은 기업 당 5억 원 이내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 사정은 추정매출액 1/2로 우대 적용

운용기간

프로그램 시행일('19.8.8.)부터 '20년말 까지 (한도 소진 시 종료)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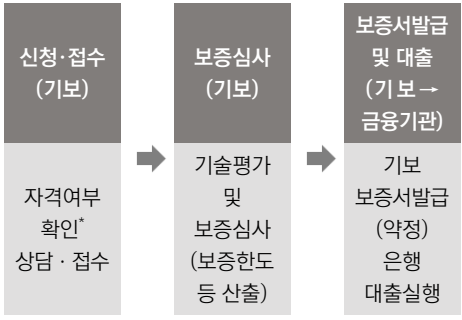

* 기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지원 대상기업 여부 자가진단 가능(자가진단 후 신청)

지원규모 6,000억 원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www.kibo.or.kr

3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❶ ~ 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❶ '18.1.1 이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직접 수입기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간접수입기업)
❷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 구매 예정기업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❸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지원규모 2,000억 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5%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7년 이내
- 대상채무 : 운전자금

신청기간 ~ '20.1.31일 ('19년도 계속사업)

신청방법 영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방문 후 보증상담 및 신청 →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5. 수출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대상

› 수출도약기업, 수출초보기업 및 일본수출기업

[수출기업 분류]

분류 기준	분 류	지원 대상 기업
수출 실적* 등	수출 도약 기업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사업 참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관련 환어음보험 가입기업 등
	수출 초보 기업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으나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 수출실적은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으로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일본 수출 여부	일본 수출 기업	•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본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실적 산정 시 간접수출실적 포함(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사항 :

구 분	수출도약기업	수출초보기업	일본수출기업
보증한도	신보 내규에서 정하는 보증한도 이내에서 운전자금보증 : 추정 매출액 등의 1/2~ 1/3, 시설자금보증 : 소요자금 이내		
보증비율	95% 적용		
보증료율	0.3%p 차감		

➔ 지원규모 총량한도 4,000억 원(예정)

➔ 운용기간 시행일(예정)부터 '20.12.31일까지
(한도 소진 시 운용중단)

➔ 신청방법 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 신청

* 지원대상·내용 등은 향후 제도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6. 영세 관광사업자 신용보증

지원 대상

- 국내 · 국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관광사업자* 중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 · 저신용(4~8등급) 기업
  * 여행업, 휴양업, 호텔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업종

지원규모 300억 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보증기간 : 5년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1.5% 내외 (변동금리)

신청기간 ~ '20.1.31일 ('19년도 계속사업)

신청방법 영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방문 후 보증상담 및 신청 →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2. 대체수입처 확보기업 등 지원

1. 수입처 다변화 기업 금융지원

1 수출입은행

지원 대상

-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수입다변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

  *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입 곤란이 예상되는 품목을 수입·구매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단, 2018.1.1.일부터 해당품목 수입·구매실적 증빙 가능 기업)

지원내용

- **(지원한도)** 수입금액의 90% 이내
- **(금리우대)** 0.5%p 감면
- **(대출기간)** 최대 2년
- **(운용기간)** 지원프로그램 도입일('19.8.7.)부터 1년간
- **(운용규모)** 1조 원

문의처 수출입은행 기업금융1,2부 ☎02-6255-5413, 5426, 중소중견금융1,2부 ☎ 02-3779-6427 / 02-6255-5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5, 5273, 5278

2 무역보험공사

지원 대상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기업

❶ 일본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수입실적(전년도 또는 최근 1년)이 있는 기업
❷ 대일 수출 · 수입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대비 30%이상 감소하였거나, 일본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의 피해 발생 기업
❸ 일본 수입자와 무역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 유효한도 보유중인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대 일본 수출 중소 · 중견기업 선제적 지원

- **(피해기업 특별보증)**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지원
- **(수출보험료 할인)** 일본 수입자 앞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한도를 보유중인 기업이 일본 외 국가로 수출다변화 시 단기수출 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보험료 10% 할인

② 수입규제 품목 수입 시 수입보험 지원

-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제외된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드폴리이미드 3가지 품목 등 백색국가 배제 관련 피해품목 수입보험 지원
  (수입자금 보증,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전국 영업점(고객센터) ☎ 02-399-6584, 영업총괄실

2.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기업

❶ 일본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수입실적(전년도 또는 최근 1년)이 있는 기업
❷ 대일 수출 · 수입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대비 30%이상 감소하였거나, 일본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의 피해 발생 기업
❸ 일본 수입자와 무역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 유효한도 보유중인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①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던 기업이 일본 외 국가로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소요되는 수입자금 보증

②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

* 수입보험에서 운영 중인 책정가능한도 대비 2배 이내 한도 부여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및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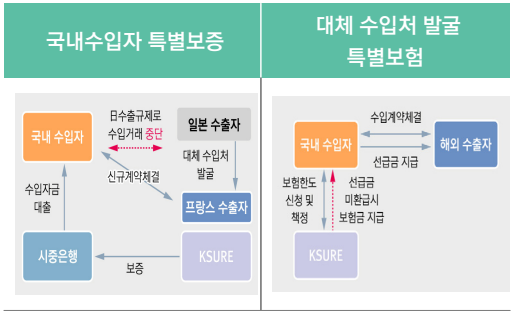

➔ 시행기간 '19.8.5. ~ '20.8.4.

* 단, 종료일 이전 일본 수출규제 상황 정상화시 조기종료

➔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 02-399-6584

3. 대체시장 개척지원, 해외기업 인수금융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기업

❶ 일본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수입실적(전년도 또는 최근 1년)이 있는 기업
❷ 대일 수출 · 수입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대비 30%이상 감소하였거나, 일본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의 피해 발생 기업
❸ 일본 수입자와 무역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 유효한도 보유중인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① **(대체시장 개척지원)** 대체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소재 기업 현장방문조사 지원* 및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5회)제공

* (Mobile-K Office) 국외기업을 직접방문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신속한 지원의사결정

② **(부품소재 해외기업 인수금융)**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M&A하는 기업에게 장기 금융(5년 초과) 제공 및 보험료 할인(30%)

[부품·소재 해외기업 인수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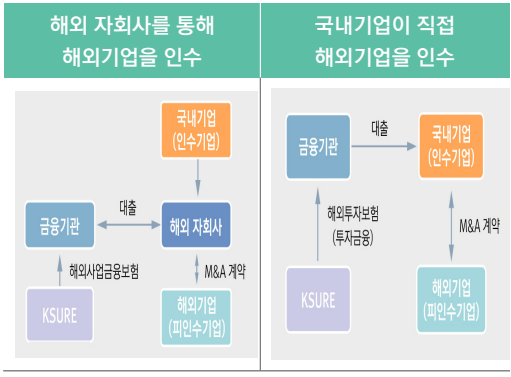

➔ 시행기간 '19.8.5. ~ '20.8.4.

* 단, 종료일 이전 일본 수출규제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 02-399-6584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1 산업은행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 · 부품기업)* (계열대기업 제외)
  * 상세내용은 「참고3」(창업, 사업재편 ·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 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지원내용

- **(용도 및 한도)** 시설자금 2,500억 원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기업규모	원화	외화
중소	△0.7%p	△0.3%p
중견	△0.6%p	△0.2%p

- **(운용기간)** 3년('19년 ~ '21년)
- **(대출기간)** 15년 이내
- **(여신비율)** 총 소요자금(사업비)의 8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

지원절차

* 기업은행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징구 후 취급

문의처 산업은행 신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2 기업은행

지원 대상

› 전통 주력산업[주1] 및 新성장 분야[주2] 중소 · 중견기업

주1) 전통 주력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자동차 / 조선 /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
-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사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주2) 3대 전략투자분야,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5G 전략산업, 4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 ~ '21년)

› **(금리우대)** 최대 0.5%p 감면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250억 원
- (시설자금) 250억 원, (운전자금) 30억 원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

› **(유의사항)**
- 동일기업 앞 동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은행과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 자금에 한하며, 기존 대출의 상환 용도는 지원 불가

문의처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 1566-2566

2.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1 기업은행

지원 대상

-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품소재 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모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6 이상
  - 기업은행 자체 신용등급 BBB+ 이상

지원내용

- (지원부문) 운전자금*

  * 단,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자금에 한함

연구개발 (R&D)	연구인력 인건비, 기술인증 및 특허권 등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교육훈련비, 기술지도비, 시험검사비 등
사업화	신기술 사업화, 판로확보 자금 등

- **(지원한도)** 동일 인당 5억 원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0%p 감면
- **(대출기간)**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단, 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 예금 담보여신은 최장 8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

지원규모 2,500억 원

문의처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 1566-2566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 상용화 하려는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특허 등록, R&D성공 등 신청 요건 충족 필요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최대 3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 2.15%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신청기간

공고 시행일('19.12.24)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❶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❷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시설자금 근거서류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지원규모

200억 원

지원절차

사전상담 및 신청	■ 신청기업 →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시 신청요건 확인
▼	
실태조사	■ 중진공 → 신청기업 실태조사 * 소재·부품·장비 품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등 확인
▼	
지원결정 및 대출	■ 중진공 → 신청기업 (10영업일 이내 대출실행) *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도입 일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부

(☎ 1357, www.kosmes.or.kr)

3.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지원 대상

- 일본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 · 부품기업)※ (계열대기업 가능)
  * 상세내용은 「참고3」 참조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21년)
- **(자금용도)** 시설자금
- **(대출기간)** 10년 이내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구분	기활법 사업재편*		일 반	
	중소·중견	계열대	중소·중견	계열대
원화	△0.50%p	△0.20%p	△0.40%p	△0.20%p
외화	△0.30%p	△0.10%p	△0.20%p	△0.10%p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완료)기업(중소·중견은 10bp 추가우대)

- **(유의사항)** 기한연장 및 기승인 여신의 동 자금으로 재원변경(한도반납 후 재승인 포함) 불가 (기활법 승인에 따른 재원변경은 가능)

문의처 산업은행 신산업금융실 ☎02-787-5624(또는 5602)

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보증 지원

1 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

-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기술고도화 보증(이하 기술고도화보증)" 및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기술사업화 보증(이하 기술사업화보증*)"을 지원
  * '기술사업화 보증'은 관련 업종 영위 및 R&D,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인 기업 대상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주요 특징 및 우대사항

구 분	기술고도화 보증	기술사업화 보증
주요 특징	한도거래보증을 통해 운전 및 시설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필요시 개별거래로도 지원가능)	R&D, 사업화 · 성장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을 각 단계별 또는 Credit-Line 설정을 통해 신속지원
보증 비율	90% 적용	90%~100% 적용
요율	0.2%p 차감	0.3%~0.5%p 차감
보증 한도	신보 내규에서 정하는 보증한도 이내에서 - 운전자금보증: (추정) 매출액 1/2~1/4 - 시설자금보증: 소요자금 이내	최대 50억 원(사업단계별 차등 적용)
기타 사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추천서(협약서) 소지 기업은 보증료 0.1%p 추가 차감 및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우대지원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 **지원규모** 총량한도 1조 원
- **운용기간** 시행일('19.10.2.)부터 '20.12.31.까지(필요시 연장)
- **신청방법** 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 신청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2 기술보증기금

지원 대상

› 소재 · 부품 · 장비 업종 강소기업 또는 소재 · 부품 · 장비 업종 영위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소재 · 부품 · 장비 업종 강소기업	소재 · 부품 · 장비 업종 영위기업*
지원 대상	•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중기부) • 스타트업 100 선정 기업(중기부)	• Tech-Bridge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 일본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등

* 「소재 · 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사항 : 보증비율, 보증료 및 보증한도 우대 적용

우대사항	소재·부품·장비 업종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기업
보증비율	95%	90%
보증료 차감	△0.4%p	△0.3%p
보증한도*	30억 원**	15억 원

*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본 특례보증금액 기준 적용

** 운전자금보증은 30억 원까지 추정매출액의 1/2 우대 적용 및 3억 원 이하는 매출액 한도 적용 생략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 **운용기간** 시행일('20.1.10일)로부터 '20.12.31.까지
(한도 소진 시 종료)

➔ **지원규모** 3,000억 원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1544-1120, www.kibo.or.kr

5.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인 소재 · 부품 · 장비 중소기업 중 생산설비 및 자가 사업장 확보 등 시설투자 기업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최대 10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대출금리 : 2.65%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신청기간

공고 시행일('19.12.24.)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❶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❷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시설자금 근거서류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지원절차

사전상담 및 신청	■ 신청기업 →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시 신청요건 확인
▼	
실태조사	■ 중진공 → 신청기업 실태조사 * 소재·부품·장비 품목 생산 및 상용화 추진 등 확인
▼	
지원결정 및 대출	■ 중진공 → 신청기업 (10영업일 이내 대출실행) *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도입 일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규모 300억 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1357, www.kosmes.or.kr

6. 연구개발 시설투자 촉진자금 지원

지원 대상

-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 · 구매 기업 및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중 수출 중단 또는 축소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재·부품 기업으로 향후 동법 개정으로 장비 포함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 소요금액의 90%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p 감면
- **(대출기간)** 최대 10년(R&D) / 15년(시설투자)
- **(운용기간)** 시행일('19.8.7.)부터 3년('22.8.7.)
- **(운용규모)** 총 3조 원(시설투자 2.5조 원, R&D 0.5조 원)

문의처 수출입은행 기업금융1,2부 ☎ 02-6255-5413, 5426, 중소중견금융1,2부 ☎ 02-3779-6427 / 02-6255-5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5, 5273, 5278

7.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지원

지원 대상

- 온렌딩 기본 대상이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 기업 및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 · 부품기업)※ (계열대기업 제외)
  * 상세내용은「참고3」참조

※ **(온렌딩 기본 대상)** 금감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 ~ 11등급에 해당하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7 ~ 11등급에 해당하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보통 신용등급 BBB~B0에 해당)

[표준신용등급 체계]

등급	예상부도율	등급	예상부도율
1등급	0.00%이상~0.03%이하	9등급	1.35%초과~2.50%이하
2등급	0.03%초과~0.05%이하	10등급	2.50%초과~5.50%이하
3등급	0.05%초과~0.10%이하	11등급	5.50%초과~10.00%이하
4등급	0.10%초과~0.25%이하	12등급	10.00%초과~20.00%이하
5등급	0.25%초과~0.35%이하	13등급	20.00%초과~100.00%미만
6등급	0.35%초과~0.50%이하	14등급	100.00%(회수의문)
7등급	0.50%초과~0.75%이하	15등급	100.00%(추정손실)
8등급	0.75%초과~1.35%이하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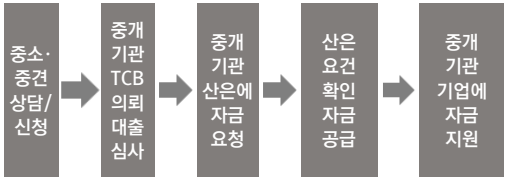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규모	건별 한도	기업별한도
중소	150억원	300억원
중견	200억원	400억원

- **(금리우대)** 대출기준금리 0.45%p 인하(변동주기 : 1년)
- **(대출기간)** 1년 이상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상환)** 연 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이자 연 4회 후취
  * 원리금 상환기일 : 매년 3.15일, 6.15일, 9.15일, 12.15일
- **(연체이율)** 온렌딩대출금리 + 3% (15%가 상한)

문의처 거래은행 여신담당자

8.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 온렌딩 지원

지원 대상

-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 · 부품 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상세내용은 「참고3」 참조

❶ 저신용등급[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 기업
❷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❸ 일자리 창출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 3인 또는 5% 이상 증가)
-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장려금 수혜기업
-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 기업
-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지원내용

- **(지원한도)** 건별 50억원, 업체별 200억원
- **(금리우대)**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 대비 약 0.60%p 인하
- **(대출기간)** 1년 이상 10년 이내
- **(자금용도)** 설비투자 · 연구개발 소요자금
- **(운용규모)** 2,000억원(법무부 투자이민펀드 예치금 700억원 + 산업은행 재원 1,300억원)

문의처 거래은행 여신담당자

Ⅲ. 세제개선 및 세정지원

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출자·인수 과세특례
2. 소재·부품·장비 R&D 세액공제 신설
3.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4.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5. 보세구역 활용 자재비축 및 신속통관 지원
6.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환급 등 지원
7. 기업부설 연구소 지방세 감면
8.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

ask16707072@korea.kr

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출자・인수 과세특례

지원 대상

- **(출자)** 공동인력, 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두 개 이상의 법인
- **(인수)**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한 법인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지원내용

-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
  - 출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 요건]

❶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연구개발, 인력개발, 시설투자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
❷ 투자대상 기업이 유상증자 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것
❸ 투자기업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투자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 인수
  - 인수금액을 아래와 같은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단, 인수가액이 5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세액공제 비율]

대상	비율
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
그 외	100분의 5

[공제 요건]

■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❶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❷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내국법인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로 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보유할 것

❸ 인수일 당시 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❹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❶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❷ 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❸ 내국법인의 사업·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 문의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4136, 4132

2. 소재 · 부품 · 장비 R&D 세액공제 신설

주요 내용

› 신성장 · 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첨단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세액 공제 신설

[세액공제 범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반 R&D 세액공제
대기업	20~30%	~2%
중견기업	20~40%	8~15%
중소기업	30~40%	25%

*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신설 분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12. 첨단소재 · 부품 · 장비 20개 기술분야를 신설하여 신성장 ·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2月 중순 예정) 이후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신설 분야]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을 위한 조성개발, 고온성형성 향상 기술, 특수 용접기술 등의 제조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기술

3) **거리감지센서용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술** : 거리감지센서 등에 사용되는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제조기술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기술, 전극봉·등방블록·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기술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제조 기술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제조 기술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제조 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7) **고기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소재·부품 제조기술**: 고용량, 고신뢰성을 갖춘 적층세라믹컨덴서의 소재·부품 제조기술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8) **선박용 모터(Motor)**: 각종 펌프(Pump), 압축기, 엔진(Engine) 시동장치, 크레인(Crane), 팬(Pan) 등 일반 선박용 모터의 소재 · 부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추진선박, 가스(Gas) 운반선, 유조선, 화학물 취급선 등 특수선박용 방폭형 모터와 전기 추진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전기추진용 모터의 핵심 소재 · 부품을 설계 · 제작 · 시험 · 평가하는 기술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 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제조 기술

3) **연삭가공기 설계·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제조 기술

4) **첨단 터닝센터**: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제조 기술(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기술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장비 설계·제조기술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제조 기술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8) **방전가공기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자율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4)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5)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나. 전기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2) 수소연료 저장 · 공급 장치 제조 기술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 · 압축 · 저장 · 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주행효율 향상을 위한 구동계 부품·모듈·시스템 개발 및 시험 기술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6) 전기차 초고속 · 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나. 사물인터넷	1) IoT 네트워크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다. 클라우드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라. 빅데이터	1) 빅데이터 수집 · 정제 · 저장 및 처리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 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 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양 · 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 · 제조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3. 차세대 소프	가. 기반 소프트웨어	1) 융합서비스 · 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이용설계및공학적분석소프트웨어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트웨어(SW) 및 보안	나. 융합 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Intelligence) 대응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 · 영상 기반 안전 · 감시 · 보안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 · 보안기술
		4) 자율주행차 · 로봇 · IoT 등 융합 서비스 · 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3) HD급 이상의 고품질 다시점 3D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4)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5)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6) 인포콘텐츠 기술
	나. 문화 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2) 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3) 만화 · 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4)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5.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 · 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 제조 기술
		2) 초소형 · 초저전력 IoT · 웨어러블 SoC 설계 · 제조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설계·제조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 ·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 · 제조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센서 설계·제조·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7)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8)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부품	1) 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4) 블랭크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6)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칩(Display Driver IC) 설계 및 제조 기술
		7)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6)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라. 3D 프린팅	3D프린팅 소재 · 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 및 6세대 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4) 6G 이동통신 기술
		5)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나. UHD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7. 바이오 · 헬스	가. 바이오 · 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9) 바이오필터 소재·부품 제조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나. 의료기기 · 헬스케어	1)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 진단 · 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 · 식품	1)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2)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6) 식물성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7)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8. 에너지신산업·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나. 신재생 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2)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3)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4) 폐기물 액화 · 가스화 기술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 기술
		7)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8) 지열발전기술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다. 에너지 효율 향상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 · 제작 · 조립 · 시험 평가기술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8)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10) 증기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 · 제작 · 조립 · 시험 평가기술
		11) 선박용 디젤엔진(Diesel Engine) 제조 기술
		12)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Pump)
	라.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자원화	1) 연소후 CO2 포집 기술
		2) 연소전 CO2 포집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6) 수소응용 저온 직접 환원기술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 · 저장시스템 기술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 기술개발
		10)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11)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마.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 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 · 제조기술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5)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6) 의료용 섬유 제조 기술
		7)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8)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9)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2)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라. 타이타늄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마.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바. 몰리브덴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사.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봉강 제조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아.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 기술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기술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 · 작업수행 로봇
		4) FPD 이송로봇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6) 용접로봇 기술
	나. 안전 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 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11. 항공·우주	가. 무인 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 문의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3.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지원내용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가 감면
  -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그 후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공제 요건]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 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

* 특화선도기업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②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할 것

문의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4.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 지원 대상

유형 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유형 2	①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유형1, 유형2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
- **(경정청구 즉시 처리)** 피해 중소기업이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 (기존2개월 → 1개월)
-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②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 유형1

› **(조사유예 등 실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 조사

  *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의 경우 '유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수용

› **(신고내용 확인 제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

› **(과세자료 처리보류)**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 다만,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

➔ 신청방법

› 신고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 · 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 문의처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세정지원센터

세정지원센터	연락처
서울청 법인납세과	02-2114-2902
중부청 법인납세과	031-888-4832
부산청 법인납세과	051-750-7432
인천청 법인납세과	032-718-6472
대전청 법인납세과	042-615-2482
광주청 법인납세과	062-236-7462
대구청 법인납세과	053-661-7462

※ 세무서 세정지원센터 :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 (재산법인납세과, 세원관리과)
⇒ 연락처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 참조

5. 보세구역 활용 자재비축 및 신속통관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지원내용

- **(자재비축)** 자체 비축공간이 부족한 업체가 확보한 주요 원자재에 대해 보세구역(주요 공항만 지정장치장, CY)을 활용*하여 비축 지원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30일 경과시 2%) 면제,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15일 → 필요기간), 보세구역 장치기간 연장(2~3개월 → 필요기간)
- **(신속통관)** 선적일정을 사전 입수하여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검사선별 최소화, 신속한 수입심사 등을 통해 신고 즉시 처리
- **(수입대체)** FTA 체결국으로 수입처를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1:1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
- **(경영안정)** 수출규제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및 관세조사 등 유예

신청방법

- **(신청장소)**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평택직할세관의 경우 통관지원과)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구비서류)** ①신청서*(소정 서식), ②피해사실 입증서류**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창구 운영 안내"

** (예시) 일본 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 문의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78 / 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053-230-5599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031-8054-7046	fta016@korea.kr

6.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환급 등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지원내용

- **(납기연장·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단기 체납, 체납 후 성실 분할납부는 제외)
- **(관세환급금 신속지급)** 환급 신청건 P/L(Paperless) 전환, 신청 당일 환급결정 및 지급(先지급 後심사)
- **(관세조사 유예·연기)**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유예, 조사중인 경우 관세조사 연기
  *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포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평택직할세관의 경우 통관지원과)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구비서류)** ①신청서*(소정 서식), ②피해사실 입증서류**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창구 운영 안내"
  ** (예시) 일본 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ask16707072@korea.kr

문의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78 / 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053-230-5599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031-8054-7046	fta016@korea.kr

7. 기업부설 연구소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

- 기초연구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기업

지원내용

-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35% 감면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
-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35% 감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추가 감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당초 감면율에 10%p 추가하여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유의사항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 · 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 세무부서에 지방세 감면 신청

문의처

부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지방세 특례제도과	044-205-3853	044-204-8970	swj2000@korea.kr
전국 세무부서	1577-5700	-	-

8.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 · 분할고지 · 징수유예 ·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신청방법

- **(신청장소)** 납세지 관할 시 · 군 · 구 세무부서(세무민원실)
- **(구비서류)** ① 신청서(관할 시 · 군 · 구 비치),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예시) 일본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문의처 납세지 관할 시 · 군 · 구 세무부서(세무민원실)

Ⅳ.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제도

(1) 수출규제 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1.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 제도 정보제공
2. 대체 수입처 발굴조사 및 현지활동 지원
3. 해외물류센터 지원
4. 해외기업 인수(M&A) 지원
5.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6. 일본 ICP기업 활용 지원

(2) 고용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특별연장근로 인가

(3) 심사 및 인허가 기간단축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
2.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Fast Track 지원

(4)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지원
1.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임대전용 산업단지 우선입주

ask16707072@korea.kr

1. 수출규제 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1.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 제도 정보제공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일본 수출통제제도 정보 및 규제 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기업

지원내용

① 전략물자 확인

›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품목이 규제품목(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서비스 제공

구분	자가판정	전문판정
판정방법	Yestrade(www.yestrade.go.kr) 접속 후 판정 가능	
판정주체	판정자(해당 업체)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
판정 소요시간	실시간 확인 가능	약 15일 이내
비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수입하려는 품목의 특성과 기술사양 등의 확인 필요	

② 일본 수출통제제도 정보제공 (https://japan.kosti.or.kr)

-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구축·운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및 CP기업 검색서비스 제공
  - 일본 수출통제제도 관련자료 지속 업데이트
- 정보제공 설명회 강화
  - 일본 수출통제 특별 교육과정 편성

➔ 문의처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 ☎ 02-6000-6400 (2번)

2. 대체 수입처 발굴조사 및 현지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2년 내 일본에서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품목*을 수입한 실적 증빙을 갖춘 기업

  * 전략물자 1,120개 및 비전략물자 중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 74개

지원내용

- 대체 수입처 발굴 조사
  - 대체 수입을 희망하는 국가별 5개 이내 공급처의 기업 개요, 연락처, 제품 사양 등 조사
- 방문상담, 현장검증 등 현지 활동 지원
  - 대체 수입 희망처와의 상담주선, 통역 및 차량지원 등

신청기간 수시

구비서류

❶ 일본수출규제 관련 대체 수입처 발굴 신청서
❷ 최근 2년 내 일본에서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지원절차

사전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1670-7072)로 상담
▼	
조사 대상 국가 선정	■ 해당 품목의 수출실적이 있는 국가(HS code 기준)에 소재한 무역관에 대체 수입처 발굴 가능여부 확인 ■ 신청기업이 조사 가능한 국가 중에서 대상국 선정
▼	
대체처 발굴 착수	■ 인터넷, 해외 유관기관 활용 잠재 공급처 발굴 ■ 무역관 → 해외 잠재 공급처에 제품 사양 일치 여부, 공급의사 등 확인
▼	
보고서 송부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신청기업에 무역관별 대체처 발굴 결과보고서 이메일 송부(신청일로부터 3주 내외 소요)
▼	
사후 관리	■ 신청기업 ↔ 잠재 공급처 간 심층 상담 지원 ■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방문상담, 현장 검증 등 현지활동 지원

문의처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3. 해외물류센터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2년 내 일본 규제대상 품목의 對일본 수입증빙을 갖춘 기업
  * 신청 시 참가목적란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이라 명시하고 첨부에 최근 2년 내 일본제품 수입 증빙 첨부
- 대체 공급선 발굴 기업 중, 해외현지 물류지원이 필요한 기업
  * 수입자 현지물류부담이 큰 계약형태의 경우 해당

지원내용

-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84개국 129개소)을 통한 수입국 현지물류 지원
  * 현지 경쟁력 있는 협력물류회사를 수행사로 선정,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통관, 보관, 운송 등)
- 창고이용여부에 따라 지원내역 및 참가비 구분

현지창고 이용여부	제공서비스	참가비
창고 불필요	공동물류센터 제외한 물류서비스 제공	무료지원
창고 필요	공동물류센터 포함한 물류서비스 제공	지역별 연간 참가비 30~100만 원

* 소재·부품 특성 상 신속한 수급이 관건으로 창고불필요 기업 다수 예상
* 참가기업 부담 : 현지운송, 국제운송, 터미널 비용 등 기타 물류서비스 이용료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지원 절차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KOTRA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참가업체 모집(본사) 및 지원가능 여부(수용여력 등) 검토 후 선정(무역관)
▼	
참가비 납부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본사)
▼	
참가업체 협약체결	■ 해외무역관과 참가기업 간 협약서 체결(무역관)
▼	
참가업체 계약체결	■ 협력물류회사와 참가기업 간 계약 체결
▼	
사업지원 개시	■ 협약개시일부터 실시(1년)

구비서류

❶ 최근 2년 내 일본 규제대상 품목의 수입 증빙 서류
❷ 수입품에 대한 브로셔 또는 상품 소개자료

지원규모 2억 원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02-3460-7428, smkwon@kotra.or.kr)

4. 해외기업 인수(M&A) 지원

신청대상

› 해외 기업의 M&A(지분투자, 인수)를 통해 기술 및 공급선 확보를 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 M&A 매물 발굴

• 현지 매물 탐색, 인수대상 후보군(Short list) 분석 후 매각 의사 타진 등

* KOTRA 해외M&A 네트워크 : 해외 무역관 30개소 및 해외 현지 자문사 약 150여 개사

› 인수 자문(가치평가 및 실사 지원 등)

• KOTRA 전담팀(투자M&A팀)의 M&A 전문가를 통한 딜 전과정에 걸친 자문 서비스 제공

수수료 무료(중견/중소기업 실사비용 일부 지원 가능)

신청기간 수시

지원절차

사전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 → KOTRA 투자M&A팀 (☎02-3497-1110) 또는 온라인(MnA@kotra.or.kr)으로 신청
▼	
잠재매물 발굴	■ KOTRA 본사 및 해외무역관이 잠재매물 발굴
▼	
타겟기업 매칭	■ 타겟기업과 국내기업 매칭
▼	
후속 지원	■ 현장실사 등 지원

신청방법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KOTRA 투자M&A팀(02-3497-1110, MnA@kotra.or.kr)

5.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지원 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교, 공공기관 등

지원 내용

-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우수 해외인력 발굴 및 채용 지원

유치 대상

-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전문인력) 비자자격에 해당하면서,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경력 1년 이상 인재
  - 석 · 박사 인재 경력무관
  - 학위 미소지인 경우 해당경력 5년 이상 인재

수수료

중소 · 중견기업은 무료. 단, 대기업은 110만 원/1명

신청기간

수시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 → contactkorea.kotra.or.kr 으로 신청
▼	
인재발굴 및 정보전달	■ 해외무역관, 해외전문 HR사 활용 인재 발굴 및 국내기업에 이력정보 전달
▼	

채용 진행	■ 국내기업, 해외인력 → 채용인터뷰, 이력확인, 고용계약 체결
▼	
후속 지원	■ 고용추천서 발급(비자신청 용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문의처 KOTRA 해외취업팀(02-3460-7387~8, contactkorea@kotra.or.kr)

6. 일본 ICP기업 활용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기업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거나 관심 있는 모든 기업

지원 내용

- 공개 ICP 기업과 우리기업간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 일본 ICP기업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현지 무역관이 ICP기업 초기 접촉 및 국내기업 소개 진행
- 일본기업의 ICP 등록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무료)
  - 관심 일본기업의 ICP 등록 여부를 일본 ICP 전담직원이 직접 확인

신청기간 수시

지원절차

사전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 → KOTRA 신북방팀(☎ 02-3460-3221) 또는 온라인(kotrajapandesk@kotra.or.kr)으로 신청

▼

日 ICP 기업 접촉

■ 일본 담당무역관 → 日 ICP 기업 접촉 및 국내 신청기업 소개, 조달 희망품목 등 전달

▼

접촉결과 회신	■ 일본 담당무역관 → 신청기업에 日 ICP 기업 접촉결과 회신 및 향후 일정 수립 등 지원
▼	
후속 지원	■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지 방문상담 등 현지활동 지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처

KOTRA 신북방팀(02-3460-3221, kotrajapandesk@kotra.or.kr)

2. 고용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 원 한도 (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1일 6.6만 원 한도 (연 180일까지)

* 시행규칙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기준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 평균한 것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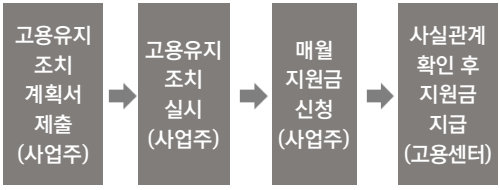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2. 특별연장근로 인가

적용대상

-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로 산업부에서 인정한 기업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의 대체 조달을 위한 테스트, R&D, 생산확대 등을 위해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시행 '20.1월말)]

❶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❷ 시설 · 장비의 갑작스런 장애 ·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❹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 · 부품과 소재 · 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❸,❹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필수

* 건강권 보호조치(복수 안 중 선택)
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②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 연속휴식 시간 부여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月말) 이후 적용

절차

-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리스트 확인
- 해당 기업이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 신청서 제출
  * 대상근로자, 연장 업무의 종류, 연장기간 등 포함
- 지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 재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
- **(구비서류)** ① 근로시간 연장 신청서, ②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 ③ 특별연장근로 사업주 확인서, ④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로 인정한 확인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3. 심사 및 인허가 기간단축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

적용대상

- 일본수출 규제로 인한 긴급상황에서 사업장이 공정안전 보고서 심사확인 요청 시 다른 보고서보다 우선 처리
  * 노동부와 안전공단 본부에서 이행상황을 관리

절차

-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착공 30일전)
- 안전보건공단 서류 심사(30일, 보완기간 제외)
- 설치과정 중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30일)
- 시운전 단계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30일)

※ 착공 후 설치과정 중 확인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 단계 확인*은 해당 사업장 요구날짜에 실시
* '설치과정 중 확인'은 50% 정도 설치시 신청하면 현장 확인, '시운전'은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시작하면 즉시 현장 확인 실시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2.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Fast Track 지원

지원 대상

› 日수출규제 대응 물질(159개 품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사용 등)하는 기업

지원내용

① **(취급시설)** 지원 대상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신규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 변경허가 신속처리(기존 75일 → 30일)

※ (기존) 장외영향평가(30일) + 시설 검사(30일) + 영업허가(15일) = 75일
(개선, '19.8.5일)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 검사 병행 + 영업허가 = 30일

② **(신규개발물질)** 신규개발물질은 물질정보 · 시험계획서 제출 시 조건부 先제조 인정

※ (법령 규정) 화학물질 등록 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 허용
(시험계획서 제출가능 항목은 전체 47개 항목 중 23개 항목)
(개선, '19.8.5일) 시험계획서 제출가능 항목을 47개 전체 항목으로 확대

③ **(R&D용 물질)**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 · 확인되면 등록 면제 확인 기간 대폭 단축(최대 14일 → 익일 처리)

* 물질명, 제조·수입량, 연구기간, 연구기관, 안전사용계획(관리전담인력, 보관·저장방법 등)

④ **(年 1톤 미만 신규물질)**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지원 대상 물질은 연 1톤 미만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토록 간소화

신청방법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 처리 기관에 제출

문의처

지원내용	인허가 업무	처리기관	전화번호
❶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장외영향 평가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00,7052
	취급시설 검사	한국환경공단	032-590-4995,4986
		한국가스안전공사	043-750-1000,13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2-703-0500,0596
❷ 신규개발물질 신속출시 지원	화학물질 등록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211~5
❸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 단축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한국환경공단	032-590-4742,4734
❹ 연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211~5

4.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지원

1.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지원

지원 대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관련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범위 확인 가능

지원내용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관련으로 수요 - 공급기업의 연계 강화 및 해당업종 지원을 위하여,
- 관계부처에서 수요-공급 기업의 공동 산단 조성에 대해 요청 시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 우선배정 등 지원

신청방법

- 지원 대상 여부를 관계부처 · 지자체에 확인 및 협의

문의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044-201-366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044-203-4264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9

2. 임대전용 산업단지 우선입주

입주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선정한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의무기간 5년, 최장 50년
- 임대료 : (초년도) 조성원가의 3%, (이후) 당해 시 · 군 · 구 공업지역 지가 변동율에 연동하여 조정
-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 입주업종 : 해당 산단마다 상이(관리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입주가능 임대전용산업단지 : 15개 단지

단지명	소재지	관리 기관
광릉테크노밸리	경기 남양주	LH
가장2	경기 오산	LH
강릉과학	강원 강릉	강릉시청
북평	강원 동해	LH
맹동	충북 음성	음성군청
석문	충남 당진	LH
장항생태	충남 서천	LH
정읍첨단 과학	전북 정읍	LH
해룡	전남 순천	순천시청
나주	전남 나주	나주시청
진주	경남 진주	진주시청
포항블루밸리	경북 포항	LH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관리기관(LH, 강릉시청, 음성군청, 순천시청, 나주시청, 진주시청)
- 구비서류

① 입주계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 그 밖의 서류는 사전문의 요망(LH)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LH (산업단지처)	055-922-4325
강릉시청 (기업지원과)	033-640-5940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043-871-3953
순천시청 (투자일자리과)	061-749-4407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61-339-8323
진주시청 (균형개발과)	055-749-8942

V.
기술개발 지원

1.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2.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3. 소재부품 글로벌 투자연계 기술개발사업
4. 소재·부품·장비 혁신Lab 기술개발사업
5. 기계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6.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7. 과기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9. 강소기업 100개 육성
10.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11. 소재종합솔루션센터
12. 신뢰성테스트 지원
13. 신뢰성 평가센터
14. 특허기반 기술개발 전략,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 지원

ask16707072@korea.kr

1.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 · 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 · 부품 업종분야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단, 내역사업/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

지원내용

- **(소재부품 패키지형)**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간 밸류체인 연계 가능한 중 · 장기 기술개발
-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개발을 통해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국가안보차원에서 첨단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소재 기술개발

※ 중점추진사항 :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 로봇 R&D 지원

❶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핵심 소재 기술 지원

❷ 산업환경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잠재적 미래 성장성이 큰 핵심 소재기술

❸ 개발된 원천기술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6,027.46억 원(신규 3,384.91억 원, 계속 2,642.55억 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6월 ~ '19. 12월	'20. 1월 ~ '20. 2월	'20. 3월 ~ '20. 4월	'20. 4월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044-203-4915 jungnam@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재료평가팀 :

☎ 053-718-8340, 8330, 8341, 8365

lys_yn@keit.go.kr (www.keit.re.kr)

2.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 대상 분야

❶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웨어러블 특화형 임베디드 SW,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플랫폼 등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❷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플렉서블·스트레쳐블·홀로그래픽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력 강화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1위 수성을 위한 차세대 소재·소자, 모듈 기술 및 유연기판 기술, 핵심공정 기술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❸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스마트카용 시스템반도체(멀티미디어 통합솔루션), IoT(스마트홈, 웨어러블디바이스) 시스템반도체 등 개발

❹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고효율 SiC소자, 고효율 IGBT 및 모듈, 전력절감 Power MOSFET, Power Module 및 IPM, IoT용 스마트 전력관리 SoC 등 개발

❺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첨단 ICT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기술 개발

❻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수입에 의존하는 OLED 공정 핵심 부품 중 국내 기업에서 개발이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큰 공용 부품 및 증착기 핵심 부품 등 개발

❼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반기술(소재, 공정, 장비) 개발

❽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혁신 소재·공정을 중심으로 LCD와 OLED에 이은 차세대·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Test-bed용 일괄공정 라인 구축을 통한 신기술 검증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❾ **(차세대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반도체기업에서 요구하는 설계, 소자공정 및 신소재·부품분야의 차세대 적용기술을 대학에서 선행개발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민간매칭

지원규모 1,456.61억 원(신규 225.82억 원, 계속 1,230.79억 원)

사업명	2020년도 예산		
	신규	계속	합계
○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225.82	1,177.42	1,403.24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65	65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35	35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	9.22	61.15	70.37
- 신산업창출 파워 반도체 상용화	-	92	92
- 실종아동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복합 인지기술개발	-	20	20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34.04	30.96	65
-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	96.5	96.5
-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159.56	776.81	936.37
-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23	-	23

추진일정

사업	과제 기획	지원과제 공고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19. 9월 ~12월	'20. 1월~2월	'20. 2월 ~4월	'20. 4월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19. 12월 ~ '20. 3월	'20. 4월~5월	'20. 5월 ~6월	'20. 7월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 044-203-4274, pss3146@motie.go.kr(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
  ☎ 053-718-8234, shkang@keit.re.kr(www.keit.re.kr)

3. 소재부품 글로벌 투자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 기술확보로드맵구축 프로그램의 경우,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기관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주관기관은 국내 소재부품 중소 · 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단, 주관기관은 해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 기업으로 한정

※ 지원 대상 분야

❶ 기술확보로드맵구축 : 해외 전략적 제휴 타겟 발굴, 타겟 기업분석 및 전략수립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글로벌 개방형혁신 기반 조성

❷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①해외기업 · IP 인수, ②해외기업에 지분투자, ③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맺은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기술획득형**(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을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기술투자형**(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 (**기술연계형**(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의 사업화 공동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조기에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유망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기술개발 前단계(해외 유망 협력파트너 탐색 · 발굴 · 매칭, 전략 수립 지원 등)부터 후속 사업화 기술개발까지 일괄 지원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당없음 (자유공모)	'20.1월	'20.1월 ~6월	'20. 7월	'20.8월

지원규모 42.50억 원 (신규 30억 원, 계속 12.50억 원)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 044-203-4914, skkim97@motie.go.kr(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재료평가팀 :
☎ 053-718-8347, jschoi@keit.go.kr (www.keit.re.kr)

4. 소재·부품·장비 혁신Lab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역별 주력분야와 연계하여, 혁신Lab(AMT-Lab*)을 통해 기술이전 방식의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개발과 기술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 AMT-Lab(Advanced Material Technology Innovation Lab) : 지역 거점 내 대학에 설치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컨소시엄 참여인력(산·학·연)의 해당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는 기구

※ 지원 대상 분야

❶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제고 : 권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글로벌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❷ 기술적합형 우수인력 확보 : AMT-Lab과 공동 R&D 수행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와 AMT-Lab을 통해 배출되는 우수인력의 지역 연계 취업을 통해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당 年 4.8억 원 이내
  -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내용 : 5개 권역*별 권역별 산 · 학 · 연 수요기술 파악을 통한 주력품목 확정 후, AMT-Lab 중심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개발 추진(권역별 기술개발 테마는 사업공고 시 안내)

  * 5개 권역 :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호남권, 경남권

추진일정

지역거점별 수요기술 발굴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12월~ '20. 1월	'20. 2월	'20. 2월~4월	'20. 5월	'20. 6월

지원규모 43.40억 원 (신규 43.40억 원)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 044-203-4924, ljb3mths@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재료평가팀 : ☎ 053-718-8342, supei@keit.re.kr (www.keit.re.kr)

5. 기계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조기반생산시스템의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세부과제별 지원 대상, 규모 등은 공고시 별도 안내)

지원내용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의 기반인 제조기반생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정밀가공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섬유기계 관련 전용 제조장비와 타 산업의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승강기, 기계요소부품 분야
  - **(제조장비실증)**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장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R&D 성과물 실증 및 고도화 지원

※ 중점추진사항

❶ **(스마트 장비 시스템)** 기존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초 기술을 통합·고도화하여, 시장 수요가 성숙한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스템 및 모듈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❷ **(융복합 기계 시스템)** 유연전자소자, 극초정밀 생산 기술, 융합 산업 기계 기술개발 완료를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확대·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핵심 생산장비, 특수목적기계 개발 지원

❸ **(친환경 산업기계)** 유럽 StageV, 미국 Tier5 및 CO2 규제 등 발효가 임박한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기술의 적기 대응을 위한 교두보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10억 원 내외 총 919.73억 원 (신규사업 577.91억 원, 계속사업 341.82억 원)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8월 ~ 12월	'19.12월 ~ '20.1월	'20.2월 ~ 3월	'20.3월 ~ 4월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 :
  ☎044-203-4311, chk1009@motie.go.kr (www.motie.go.kr)
  ☎044-203-4318, cloud@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053-718-8220, junseoklee@keit.go.kr (www.keit.re.kr)

6.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지원 대상

- 주력 산업분야 소재 · 부품의 핵심원천기술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실증 지원

지원조건

내역	과제기간	과제규모
소재융합 혁신기술개발 사업	4년 이내 (0.5년+3년 이내 /개발내용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1단계(3억 원 내외/과제) → 2단계(8억 원 내외/과제)

기간/규모 '19~'23년 / 총 480억원

예산 '20년 88억원(5개 품목, 11개 내외 과제)

'19년 대상품목	대외의존 현황
OLED 청색 발광소재	일본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 독점적 공급
형성기억 고분자 복합소재	일본에서 개발(80년) 후 상당수 관련 기술 미국·일본 보유
수광 다이오드용 유기물 하이브리드 소재	Hamamatsu, ROHM 반도체 등 일본기업 독점
금속공기전지 핵심소재	일본 NEDO, 도요타, 미쓰비시, 도시바 등이 선도
mmWave 전자파가지 소재	유기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이 원천기술 보유

신청기간 미정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 042-869-7785

7. 과기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관련 159개 관리 품목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자문 분야 및 내용

- 관리품목과 관련된 애로 기술 진단 및 기업 현황 분석 ·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국산 원천기술 개발 지원

첨단소재 분과	화학·생물 분과	화공·장비 분과	전자·컴퓨터 분과	기계·항공 분과
팀장: 이혁모교수	팀장: 이영민교수	팀장: 이재우교수	팀장: 문재균교수	팀장: 이두용교수

- 자문단 : 관련 분야 100여 명의 전 · 현직 교수진으로 구성

지원절차

접수 → 담당 분과 지정 → 담당 교수 지정 → 기술 개발 지원 → 사후 관리

향후계획

- 동 자문단을 전국 4대 과기원*으로 확대하여 분야별 지역별 전문성을 토대로 기술자문 지원 예정

  * 한국과학기술원→한국, 대구경북, 광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확대

문의처 KAIST 기술자문 전담 접수처

☎ 042-350-6119, smbrnd@kaist.ac.kr

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대상

›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또는 이노비즈기업)

* (예) 반도체장비,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디스플레이, 고분자 재료, 세라믹 재료, 정밀화학, 화학공정, 표면처리, 전기전자부품 등(산업분류기준)

지원조건

(단위 : 억원)

내역	지원 규모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 비율	공모 형태
수출 지향형	125	최대4년, 20억 원	정부 출연금 65%	자유 공모
시장 확대형	739	최대2년, 6억 원		자유 공모 (품목 지정)
시장 대응형	788	최대2년, 5억 원		

지원규모 1,456.61억 원 (신규 1,652억 원)

신청기간 1월, 5월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절차

사업공고 (1월, 5월)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 에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2월, 6월)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에 온라인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3~4월, 7~8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 또는 기술분야검토 위원회(필요시), 대면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업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등(사업공고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357(국번없이), 042-388-0312,0317

9. 강소기업 100개 육성

지원 대상

- 소재 · 부품 · 장비 중 중소기업이 개발 가능한 품목의 기술력과 혁신역량 등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 (별도 선정 예정)
  * '19.12.10 선정된 55개사를 제외한 45개사를 '20년 공고를 통해 선정 예정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예비 포함)에 대해 R&D*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기술이전 등 지원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 기술개발사업 등

-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융자한도(100억 원) 내에서 지원하고 필요시 기술보증(30억원)을 추가하여 최대 130억 원의 필요 자금 공급

신청기간 별도공고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

지원절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01

10.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 · 부품 · 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년, 8억 원	75% 이내	지정공모

-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TB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기보에서 추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과제계획서 평가 후 최종지원

지원규모 125억 원

신청기간 '20. 1월 및 5월중 예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공고 예정

지원절차

사업공고 (1,5월)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3,6월)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에 온라인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4~5월, 7~8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 또는 기술분야검토위원회 (필요시), 대면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6월,9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업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45,448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711~0724

11.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지원 대상

- 소재부품과 관련하여 기 구축 신뢰성 인프라(장비 · 기술 · 전문인력)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소재정보은행)** 소재개발 및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물성정보, 심층보고서, 특허정보, 기술 · 시장동향 등 제공
- **(테스트베드)** 파일럿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파일럿 테스트 및 시제품 제작 서비스 제공

[소재종합솔루션센터 구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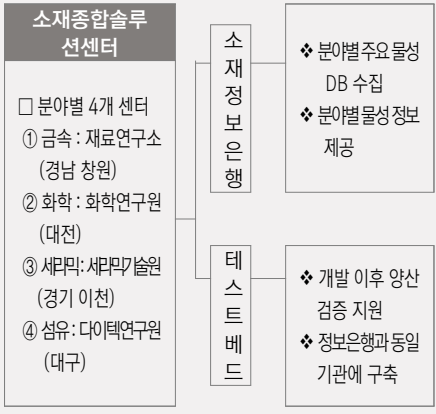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센터별 담당자를 통해 지원방법 및 절차 개별문의

문의처

분야	수행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금속	재료연구소 (소재종합 솔루션센터)	소재정보 은행	김다영 기술원	(055)280 -3273
		테스트 베드	이진수 기술원	(055)294 -8643
화학	한국화학 연구원 (소재종합 솔루션센터)	소재정보 은행	박재성 책임 연구원	(042)860 -7903
		테스트 베드	조성근 책임 연구원	(042)860 -7911
섬유	DYETEC 연구원 (소재종합 솔루션센터)	소재정보 은행	장진우 전임 연구원	(053)350 -3747
		테스트 베드	이지훈 전임 연구원	(053)350 -3748
세라믹	한국세라믹 기술연구원 (소재종합 솔루션센터)	소재정보 은행	김경훈 책임 연구원	(055)792 -2773
		테스트 베드	여동훈 수석 연구원	(031)645 -1301

12. 신뢰성테스트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인력 · 장비 등)를 활용해 신뢰성 향상 및 소재 · 부품 개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 · 부품 개발을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바우처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처럼 지불할 수 있는 쿠폰

- 지원예산 : '19년 394억 지원 (본예산 184억, 추가경정 예산 210억) '20년 200억 지원 예정

- 지원기간 : ('19년 예산분) 바우처 발급일 ~ '20.6월 ('20년 예산분) 추후 공고예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3.2%(중소기업), 25%(중견기업), 40.2%(대기업)를 현금으로 납부
- 신청기간 : 별도 공고('20년 7월 공고 예정)

지원규모 기업당 상생형 7천만~2억 원, 단독형 5백만~7천만

지원절차

참여기업선정	■ 신뢰성기반 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참여기업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 민간부담금 입금
▼	
바우처 사용 및 완료	■ 바우처 발급 → 바우처 사용 → 완료 검수

* 상기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뢰성바우처사업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참고

구비서류

❶ (상생형) 바우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10장)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필수)
❷ (단독형) 바우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4장)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 향상팀
☎(02) 6009-3000, 3928, 3938, 3923, www.신뢰성바우처.org

13. 신뢰성 평가센터

지원 대상

- 소재부품과 관련하여 기 구축 신뢰성 인프라(장비 · 기술 · 전문인력)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신뢰성 기술, 첨단 평가 장비를 이용하여 신뢰성 문제해결, 기술보급 및 확산, 인증 등 종합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
  * 금속 등 5개 분야(금속,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11개 신뢰성 평가센터 (하단의 문의처 참고)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평가센터 구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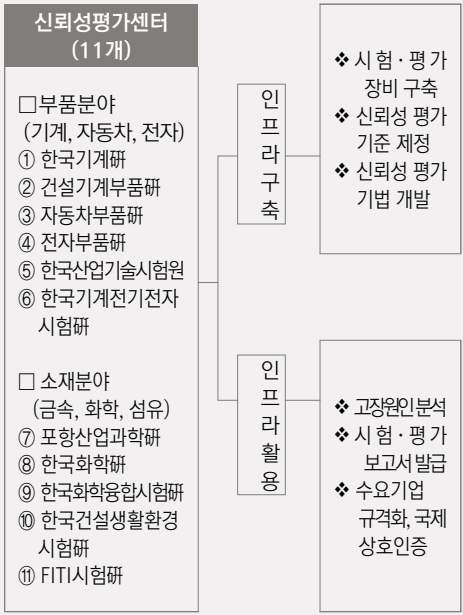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센터별 담당자를 통해 지원방법 및 절차 개별문의

➔ 지원규모 해당 없음

문의처

분야	수행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석평가센터	강성 책임연구원	(054)279-6932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허규용 선임연구원	(042)860-77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김선 선임연구원	(02)2092-360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강미정 선임연구원	(042)723-3074
섬유	FITI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오정택 선임연구원	(02)3299-8148
전기전자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이주호 선임연구원	(031)789-728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정의효 선임연구원	(031)8084-544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국방기술센터 신뢰성팀	양일영 연구원	(055)791-3567
기계·자동차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임신열 연구원	(042)868-7169
	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임현택 팀장연구원	(041)559-3378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유영철 선임연구원	(063)447-2553

14. 특허기반 기술개발 전략,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및 대체 기술 개발 업체

지원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신청기업	■ (기초 컨설팅) 선행특허검색, 교육 등(지역IP센터) ■ (정규 지원사업 우대) IP-R&D 전략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등 * 소·부·장 핵심품목 분야를 대상으로 함	RIPC 특허 전략원
소재·부품·장비관련 산·학·연	■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허분석 제공 * 탄소소재, 화장품소재, 로봇 핵심부품 등 ■ 100+α 핵심품목별 특허동향 보도자료 배포 (주요특허 리스트 제공) * 품목별 담당심사관 지정	특허청

› **(특허분석·전략)** 기초 컨설팅, 핵심특허 대응, 대체기술 개발 전략, 대체 공급선(연구자) 정보 등 제공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8.5) 100대 전략품목 + 향후 R&D부처 추가 합의 품목

› **(특허 사업화)** 산학연이 보유한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우수 특허에 대한 사업화 촉진

유 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관
기업 보유 특허	소재·부품 분야 우수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IP금융) 및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발명진흥회
學·硏 보유 특허	대학·공공연 우수 소재·부품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특허기술 중개(특허거래전문관)	특허전략원, 발명진흥회

› **(특허분쟁 대응)** 분쟁에 휘말렸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특허분쟁 컨설팅 및 공익변리사 상담 등 지원(지식재산보호원)

- **(분쟁 컨설팅)**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분쟁상황(경고장, 소송 등)에 맞는 대응 전략제공을 통해 분쟁 대응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 정부 지원금 28백만 원을 한도로 총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

- **(공익변리사 상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재권 창출 및 보호기반 강화

› **(심사제도)** 소재 · 부품 · 장비 지재권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 심사제도 컨설팅 제공, 필요시 현장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 개선

*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출원, 업으로서 실시중인 경우 및 첨단소재 관련으로 4차 산업혁명 신특허분류를 부여받은 출원 등에 우선심사 지원中

신청절차

- **(신청방법)** 전국 지역 IP 센터 또는 소재부품수급대응 지원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①신청서*(소정 서식), ②피해사실 입증서류**

* 서식 다운로드: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2.ripc.org)

** (예시) 일본 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Ⅵ.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1.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 개요
2.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 패키지 지원내용
3.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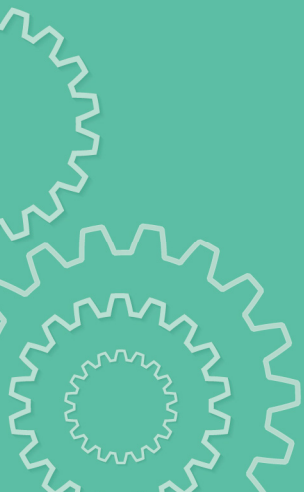

ask16707072@korea.kr

1. 소재 · 부품 · 장비 협력사업 개요

➔ (정의)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모든 유형의 기업 간 협력

➔ (추진방향)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내 다양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예산,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을 통하여

› '수요-공급기업, 공급기업간 Win-Win 구조' 및 '대 · 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협력'을 정착하고, 국내수요 확대 ⇄ 공급 품질개선 이라는 선순환 도출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도모

➔ (유형) 크게 수직적 협력모델과 수평적 협력모델로 구분

› **(수직적)**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지칭하며, ❶ 협동 연구개발형(공동 R&D 등)과 ❷ 공급망 연계형(공동 Fab) 등 으로 구분

› **(수평적)** 수요기업 간 협력으로, ❸ 공동 투자형(공동 시설투자 등)과 ❹공동 재고확보형(공동 구매, 보관 등) 등으로 구분

[주요 협력모델 유형 및 유형별 지원 예시]

2. 소재 · 부품 · 장비 협력사업 패키지 지원내용

- 지원 목적인 조속한 공급망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해, 패키지 지원 시 수요기업 참여 또는 예정 (구매확약서 등) 전제
- R&D,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사항 마련("메뉴판")
  ⇨ 개별 협력기업들의 구체적인 상황·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기술개발 (R&D) 예산 및 기술혁신지원

› **(기술개발 예산)** R&D 예산사업 우선지원

- **('20년 R&D예산)** 100대 핵심전략부품 관련 기술개발, 실증, 신뢰성 분야 및 기초 · 원천기술 상용화 등에 총 1조480억 원 반영

['20년 정부 R&D 주요 지원 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 기계 · 장비기술개발을 통해 수요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7,032억 원 지원
- 협력모델 지원에 필요한 신뢰성, Test-bed 구축 등 신뢰성분야에 1,834억 원 지원
-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1,186억 원 지원(총 4개 사업)
-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연계 강화에 428억 원 지원

- **(기술협력 후속지원)**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기술개발 후, 구매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후속 R&D 우대

› **(특허 등 기술혁신 지원)** 발굴된 협력사례에 지적재산권 강화, 기술 이전 등 기술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우선제공

- **(지식재산권 강화)**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20년 75개 품목)
- **(핵심특허 우선이전)**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주요 핵심특허 우선이전
- **(기술이전)** Tech-Bridge*를 활용하여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공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상용화 R&D 지원

  * 기보의 기술거래 플랫폼: 기보 영업점을 통해 공급기술(34만건)을 수요기업과 매칭 지원

› **(우수인력 지원)** 출연(연), 4대 과기원 등의 전문인력* 및 유관기업 네트워크** 등 활용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우선지원

  * 현재 출연연 패밀리기업은 약 6,100여개 (연구자원 지원·활용 협약)이며,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기술자문단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기술애로 해소 노력

  ** 기업협력 중개: (대기업) 공급처 확보 + (중소기업) 기술 획득 (연구기관 기술 이전)

› **(기술자문단)**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기술자문단*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기업 기술애로 해소 및 기업 간 협력강화

  * KAIST(대전) 128명, DGIST(대구) 183명, UNIST(울산) 120명, GIST(광주) 110명 규모

› **(중소기업 인력지원)** 이공계학 · 석 · 박사채용시 인건비 지원 등 중소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우선지원

➔ (첨단장비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소재 · 부품 · 장비 주요 핵심산업 분야에 대해 대형연구시설(나노팹, 가속기 등)을 기반으로 기업 간 협력 촉진 및 공급망 연계 · 확대 등 지원 강화*

* 경제성 등의 이유로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백단계에 집중

› 공공 · 민간 나노팹 간 협업 채널* 구축으로 제품 성능 신속검증

* 평가과정 예시 : (기초단계) 공공 → (적용단계) 공공+민간 → (양산단계) 민간

› 대기업 (수요)과 중소기업 (공급)의 엔지니어가 함께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시설이 공동협력 연구 플랫폼 역할 수행

➔ 기술개발 (R&D) 예산 및 기술혁신지원

›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조특법상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 추가

* (R&D 법인세 공제율) 대 · 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

› (공동출자 · 투자)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에 R&D, 설비투자 목적의 공동 출자시 법인세 세액공제(출자금의 5%)

• 수요 · 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 및 기간 연장 ('20~'22년)

* 대 · 중견기업 (취득세 35%, 재산세 35%),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 원천기술 · 신성장동력 분야 추가10%p

› **(상생협력기금)**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제지원* 가능

* ①기부금 손비인정, ②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③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

› **(M&A)**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을 인수 시 법인세 세액공제('22년 말 일몰)

*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대 5%, 중견 7%, 중소 10%)으로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자금·보증 등

› **(정책자금)** 중소 · 중견기업의 설비 · 기술투자, 시설 확대 등에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 투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기은 10조 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산은, 1조 원) 등

•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중진공) 등을 협력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하고, 한도 확대(건별 60→100억 원) 및 제외기준 예외* 적용

* 제외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 **(M&A지원)** 협력 기업들의 공동 M&A 진행 등의 경우, 해외 M&A · 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등을 통해 인수자금 지원(프로그램 규모 2.5조 원)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시중은행,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참여하며 해외 M&A 자금, 컨설팅, 사후통합관리 등을 종합지원

- **(보증)** 협력 중소기업에 신보 및 기보 보증 프로그램(신보 7,500억 원, 기보 2,500억 원)을 활용하여 우선 제공(기존보증 만기연장, 신규 보증비율 상향 등)

- **(투자)** 대기업 등과 매칭하여, 소재 · 부품 · 장비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1,000억 원 규모)를 모태펀드 내에 조성('20년 예산안 600억 원)

규제개선

-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필요한 기업의 규제건의는 관계부처가 적극처리*하고, 법령 적극해석 및 조속한 법령정비 추진의무 부여

  *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적극적 규제개선에 대해 면책조항 마련

[협력모델 규제개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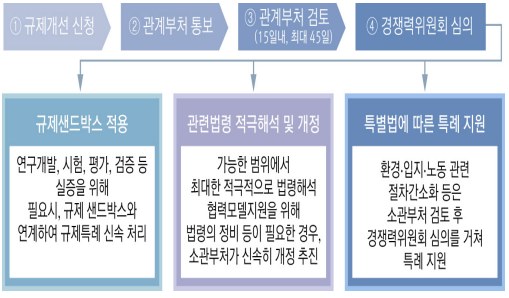

- **(환경)** 신규로 발굴된 수출규제 대응물질 관련 투자 사례에 대해 공장 · 인허가 신속 추진
- **(노동)**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시급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 인가

- **(입지)** 공동 투자 등에 대해 수도권 산단 우선배정,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지원
  *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3%에 지가 변동률을 연동한 수준으로 공급

핵심기업 성장 지원

- **(핵심기업 선정)**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술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지원
  * 스타트업 → 강소기업 → 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추진

- **(특화선도기업)**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수준 기업으로 집중육성

- **(강소기업 100)**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강소기업 100'을 지정하여 패키지 지원, 대기업 등 추천 시 평가 우대
  * 패키지 지원 : 기술개발 (최대 20억 원 등), 사업화 (융자 최대 100억 원 등), 공정혁신 (스마트공장 1.5억 원 등), 1:1 전담지원단 밀착지원

- **(스타트업 100)**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스타트업 100'으로 우선 선정, 사업화 자금 등을 대기업과 연계 지원
  * 대기업 자금 + 스타트업 기술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총 100개 스타트업 발굴 (연 20개)

- **(기업지원 인센티브)** R&D참여 촉진, 해외인증지원, 공공시장 확대 등 인센티브 지원

- **(R&D 참여촉진)** 경쟁형 · 개방형 R&D 등 기술개발 방식을 다양화하여 개방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의 민간부담금 비율 하향
  * 수요기업의 경우에는 매칭비율을 중소기업수준까지 완화
- **(공동행위)** 수출규제 관련 핵심품목을 협동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인가를 통해 공동행위 허용
  * 공동 연구·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등
- **(해외인증 획득지원)** 해외진출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신뢰성 등과 연계하여 CE, UL 등 해외인증획득 우선 지원('19년 106.5억 원)
- **(공공조달)** 공공기관 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조달 우선구매 지원
- **(시장개척)** 대 · 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및 수출 컨소시엄을 우선지원하고, 수출바우처 선정 우대
  * '디자인개발, 홍보, 수출전략, 시장조사, 바이오발굴, 통번역,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 서류대행, 보험, 브랜드, 전시회, 법무 · 세무 · 회계' 서비스 중 바우처로 선택 · 지원
- **(물류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KOTRA, 84개국 129개소)를 활용하여 물류 · 보관 우선지원
- **(대중소 연계)**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분업적 협력이 가능한 대 · 중소기업 상시연계 지원
  * 협·단체 수요조사, 피칭대회, 지방청 등을 통해 대기업 연계 희망 중소기업 발굴

›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혁신역량이 집적된 R&D특구를 중심으로 혁신거점 내 첨단기업 간 협력에 대해 종합 패키지 우선지원

- R&D, 네트워킹, 펀드, 세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한 성장경로별 패키지 육성책 지원

  * R&D 실증 규제특례 추진,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법인세 등 감면, 공장증설 등의 개발 인허가 일괄 처리, 개발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및 입지규제 완화 등

3.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 지원 절차

협력사업 발굴 및 선정 절차

❶ 협력사업 발굴
- ①직접 발굴, ②기업 제안

⇨

❷ 경쟁력강화 계획서 제출
- 신청기업 작성, 산업부(실무추진단)에 제출

⇨

❸ 관계부처검토
- 관계 부처 통보 및 의견수렴

⇨

❹전문위원회 사전검토
- 전문위원회 검토 및 논의

⇨

❺ 경쟁력위원회 상정
- 기업발표 → 전문위원장 검토결과 발표 → 위원회 논의 및 의결

정부 지원 및 후속관리

- 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된 협력사업은 R&D · 금융 · 규제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고 실무추진단에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성과 점검

❶신청기업 통보
- 경쟁력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❷ 후속조치 계획 수립
- 협력사업 추진 일정
- 정책지원방안 구체화

⇨

❸ 정부지원
- 단계별 · 시기별 정부지원

❹ 협력사업 모니터링
- 계획 대비 진행 상황, 수요기업 참여여부 등

⇨

❺ 중간점검 및 보완
- 매년중간점검 실시
- 전문위원회 검토 · 보완

⇨

❻ 최종 성과 점검
- 협력사업 성과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

[참고] 협력사업 주요 특징(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 기준)

❶ 대상은 소재 · 부품 · 장비 핵심전략품목에 부합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에서 발표한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기술 품목으로, 4개 품목 모두 해외에서 전량 또는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 확보가 시급

❷ 수요 · 공급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 기술개발부터 양산단계까지 연구소-공급기업-수요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여 공급망 완결형으로 구조화
  * 예) A연구소가 공급기업 B社에 소재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B社가 주도하여 분말소재를 개발하여 C社에 공급하며, C社는 중간체를 제조하여 D社에 납품하는 구조로써 C社, D社가 성능평가 및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관련 피드백을 공급기업에 제공

❸ 구체적인 기술개발 및 양산화 계획, 사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 · 고용 효과가 명확
- 4개 협력사업은 '24년경까지 국내 수요의 20%~60%를 확보함으로써 연간 3,600억 원 이상 매출 창출을 목표로 하며,
- '19~'24년까지 투자 1,800억 원, 고용 330명 규모로 계획

참고 패키지 지원내용

1 기술개발(R&D) 예산 및 기술지원

❶ 기술개발 예산 지원

■ '19추경 : 총 1,969억 원 지원

▸ 소재·부품	핵심전략 25개 품목, 34개 과제 총 650억 원 지원
▸ 기계·장비	20개 핵심장비 품목 320억 원 지원
▸ 신뢰성	신뢰성평가 280건, 기반구축 등 총 400억 원 지원
▸ 양산평가	반도체(99건), 디스플레이(33건) 총 350억 원 지원
▸ 대중소 분업적 상생협력	대기업 제시품목·추천 중소기업 217억원 우선지원 (총140개과제, 최대2년, 기업당6억원)
▸ 기초·원천R&D	5개 품목, 31.5억 원 지원

■ '20예산안 : 총 1조 480억 원 반영

▸ 수요기업 연계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기계·장비기술 개발 등 7,032억 원 지원
▸ 신뢰성	신뢰성, Test-bed 구축 등 1,834억원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기술개발 1,186억원 지원(총 4개 사업)
▸ 기초·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 상용화 연계 강화 428억원 지원

❷ 기술지원	
■ 지식재산권 강화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 ('20년 75개 품목)
■ 핵심특허우선이전	공공연구기관 보유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허 이전
■ 기술이전	Tech-Bridge 활용 공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상용화 R&D 지원
■ 첨단인력 활용 강화	출연연, 4대 과기원 등 전문인력 및 유관기업 네트워크 활용하여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첨단인프라 활용 중개	
▸ 나노팹간 협업 채널 구축	공공·민간 나노팹간 채널 구축 → 성능 신속검증
▸ 공동협력연구 플랫폼	공공연구시설이 공동협력연구 플랫폼 역할 수행
■ 민간 기술협력 활성화	기술개발 후 구매까지 연결시 후속 R&D 우대
■ 공공조달	공공조달 우선구매 지원

2 세제지원

❶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추가

❷ 공동 출자·투자

수요기업이 R&D, 설비투자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시 법인세 세액공제

수요·공급기업 투자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기간 연장

❸ 상생협력기금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제지원*

* ①기부금 손비인정, ②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③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

❹ M&A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3 자금·보증 등

❶ 정책자금

설비·기술투자, 시설확대 등 지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등 협력 중소기업 우선지원, 한도 확대 및 제외기준 예외 적용

❷ M&A 지원

협력기업 공동 M&A 추진시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등을 통해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 규모 2.5조 원)

❸ 보증

신·기보 보증 프로그램* 활용하여 우선제공
* 신보 7,500억 원, 기보 2,500억 원

❹ 투자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1,000억 원 규모) 조성*
* '20 예산안 600억 원 반영

4 규제개선

❶ 규제 샌드박스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 위한 규제특례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

❷ 법령해석

가능한 범위內 최대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

■ 특별연장근로 (노동)	시급한 기술 개발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❸ 법령개정

필요시, 소관부처에서 신속히 개정 추진

❹ 특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은 소관부처 검토 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지원

■ 공장 인·허가(환경)	신규 발굴된 수출규제 대응물질 투자에 대한 공장 인·허가 신속 추진
■ 산단우선 배정·입주(입지)	공동 투자 등에 대한 수도권 산단 우선배정,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지원

5 핵심기업 성장지원

❶ 핵심기업 선정 및 지원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술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지원

■ 특화 선도기업	핵심전략기술분야의 혁신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지정→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
■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 대상 '강소기업 100'을 지정하여 패키지 지원
■ 스타트업 100	시장경쟁력 있는 기술 보유 창업기업을 '스타트업 100'으로 선정· 사업화 자금 등 대기업 연계 지원

❷ 기업지원 인센티브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력 가능한 대·중소기업 상시연계 지원

■ R&D 매칭비율	진입장벽 높은 분야의 민간부담금 비율 하향* * 수요기업의 경우, 매칭비율을 중소기업 수준(25%)까지 완화
■ 공동행위	수출규제 관련 핵심품목 협동 연구개발·양산시 공정거래법상 사전인가 통해 공동행위 허용
■ 해외인증 획득지원	CE, UL 등 해외인증 획득 우선지원

■ 공공조달	공공조달 우선구매 지원
■ 시장개척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및 수출 컨소시엄 우선지원, 수출바우처 선정우대
■ 물류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KOTRA) 활용 물류·보관 우선지원
■ 대·중소 연계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력 가능한 대·중소기업 상시연계 지원
❸ 산학연 협력	
R&D 특구 중심으로 혁신거점 내 첨단기업 간 협력에 대해 종합패키지 우선지원	

Ⅶ.
소재·부품·장비 산업 법령정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 소부장 특별법 주요 내용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개요
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요

ask16707072@korea.kr

1. 소부장 특별법 주요 내용(2019. 12. 31., 개정, 2020. 4. 1., 시행)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8.5일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안정성 확충,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 「소재 · 부품 전문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 필요

법 개정 기본방향

- 특별조치법의 대상 · 범위 · 기능 · 방식 ·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을 상시법화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
① (대상)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② (범위) '소재 · 부품'
→ '소재 · 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③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④ (방식) 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⑤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특별법 주요내용]

□ **(대상)**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 강화 母法으로 전환
⇨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업단위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기업 · 대학 · 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 신설

› **(제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정책대상)** '소재 · 부품' → '소재 · 부품 + 장비'로 확대
* 소재 · 부품과 장비의 결합·융합 추세가 강화되고 산업가치사슬 상의 상호 영향력 확대
*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목적)** '기반조성' 등에 더하여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국가안보 개념 추가

› **(지원중점)**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재 · 부품 · 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을 가진 특화선도기업 선정 · 육성(창업기업 → 강소기업 → 특화선도기업으로 성장지원)
* 핵심전략기술 : 산업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활동을 위해 핵심기능을 하는 기술
* 특화선도기업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생산능력 보유 또는 성장유망 기업

› **(투자확대)**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투자조합 투자대상을 전문기업* → 특화선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인수 · 합병, 기술도입 등 지원근거** 마련

* 전문기업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정보 수집·제공, 컨설팅지원, 자금 조성, 기술지원, 자금 연계, 소요비용지원 등

➔ (기능)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숟주기 지원강화

⇨ 기술개발 → 실증 · 신뢰성 향상 → 양산 성능평가 →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정책강화를 통해 개발과 생산 사이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

› **(기술개발)** 모든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특허 등 지식재산권 조사 · 분석, 공동 R&D 등 기술확보 가능성 확장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국제협력 및 표준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책연구소 등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지원 강화

*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 · 공유 · 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에 필요한 금융지원, 지식재산권의 출원 · 등록 등 지원시책 마련

› **(테스트베드)** 공기업 · 출연연 등 공공부문 실증설비 개방 및 평가, 민간기업의 테스트설비개방에 인센티브* 부여, 테스트베드 확충

* 실증관련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지원

- 신뢰성평가 · 인증 지원, 신뢰성 보증근거 신설,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 우선구매로 공급망 진입 및 시장창출 촉진

  * 출연연 등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손해담보 공제 등 신뢰성보증 추진

› **(인력양성)** 기술인력 수급 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설치지원, 핵심전략기술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동교육훈련시설 설치근거 신설

- 전문인력조사, 취업절차 완화 등 해외우수인력 유치 시책 신설

› **(특화단지)**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산 · 학 · 연 간 개발 · 생산 집적화 지원

  * 특화단지육성시책 추진, 산업기반시설·연구개발시설 등 인프라 설치 지원, 부지조성 등 자금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 (방식) 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특례 등 패키지 지원
⇨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 또는 공급-공급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모델 발굴 · 지원

› **(협력모델)**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 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검토 · 심의
→ 범부처 차원의 금융 · 입지 · 특례 등 패키지 지원

-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은 공동기술개발, 공동기반 구축, 연구개발 · 생산을 위한 투자, 설비확충 등 종합지원

› **(규제개선)** 기업의 규제건의는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법령 정비사안은 관계부처가 검토 및 조속한 법령정비 의무 부여

* 기업 신청 → 산업부장관 관계행정기관 통보 → 15일내 회신(최대 45일 연장 가능) → 경쟁력 강화위원회 심의 → 관계행정기관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추진

- 연구개발, 시험 · 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규제특례 신속 처리
- 중대과실이 없는 한 적극적 규제개선에 대해 면책조항 마련

› **(특례조항)**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신설

* (화평법/화관법/산안법) 화학물질취급시설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등록 또는 등록면제확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속처리 특례

* (임대산단)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해 임대산단 우선입주 지원 등

*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장관 및 과기부장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최대한 단축처리

□ (체계) 범정부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조정 수단 마련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

›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산업부에 설치

*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시급성을 고려 대통령령을 통해 기 출범(10.11일)

- **(심의사항)** 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 전략, 기업 간 협력모델, 소재 · 부품 · 장비 수요 · 공급 안정 및 실증 · 양산지원, 핵심전략기술 선정 · 관리, 기술 · 자금 · 입지 등 지원 및 규제 · 제도 개선 등

› **(특별회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20년 2.1조 원 규모)

*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관세의 10%기준), 타기금 전입금, 기술료 등

› **(수급안정화조정)** 국제통상여건 급변,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 등 신설

* (조정내용) 생산·공급계획 실시·변경, 물류·비축, 시설 개선·확충 등

* (발동절차)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 ·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2.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개요

추진 배경

-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안전망 구축을 위한 R&D, 펀드, 출자 · 투자 등 각종 예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특별 재정시스템 필요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 설치 (국가재정법 제4조)

특별회계 현황

- **(설치근거)**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
- **(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5년 한시)
- **(지출용도)** R&D 및 성과확산, 신뢰성 향상, 실증 · 성능검증 등
- **(세입재원)** 소재 · 부품 · 장비 R&D 기술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 입	세 출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 수입 또는 운용수입 •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 신뢰성향상, 실증·성능검증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투자 등 자금지원 •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3.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082호, 9.17 시행)

위원 구성

- **(정부)**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부위원장), 교육 · 과기 · 국방 · 행안 · 복지 · 환경 · 고용 · 국토 · 중기 · 국조 · 공정위 · 금융위 장관(급) 및 경제수석(15명)
- **(민간)** 소부장 관련 산학연 전문가 14명

주요 기능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 · 조정

주요 기구

- 산하 전문위원회 · 특별위원회에서 주요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특정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실무추진단 설치(산업통상자원부 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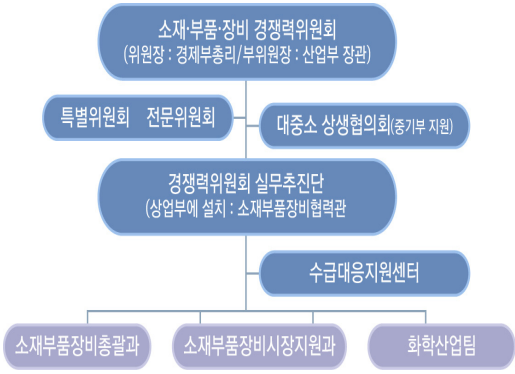

Ⅷ.
각 지자체별 지원사업

[참고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현장지원반 핫라인

[참고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연락처

[참고3]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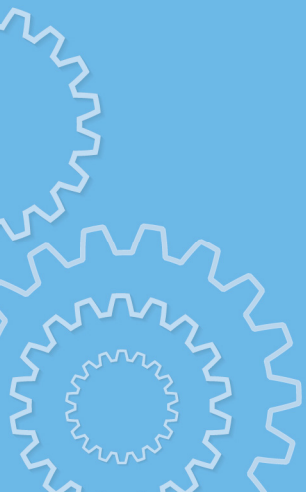

ask16707072@korea.kr

1.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 수출규제 대상 업종 직, 간접 피해기업
- 부품, 소재 R&D를 위해 투자를 행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①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2,150억 원 지원
- 지원조건 : 한도 5억 원, 금리 2.0 ~ 2.3%,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② **(매출채권보험)** 피해업종 매출채권 보험료 신규지원 (1조 원 보장)
- 대상 :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 기업
- 보험한도 : 보험계약자 50억 원, 구매자(중소기업 70억 원, 중견 100억 원)

③ **(수출보증보험)** 수출 신용보증보험 대상 확대 (1,000건 → 3,000건)
-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3,000만 불 이하)
- 추진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
- 지원종목 : 수출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4종, 환변동보험

④ **(세제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 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피해기업
- 세부내용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연기, 지방세 감면, 기타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각 문의처에 접수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융자 지원	① 수입기업 : 수입신고필증, 수입실적증명서 등 ② 구매기업 : 매입세금계산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③ 제조·판매·유통기업 : 납품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피해사실입증자료(수입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수출보증보험	① 개별보험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수출자 은행원화계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② 단체보험 : 가입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신청기업정보기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확인서
세제 지원	관련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내역서, 피해사실입증자료(매출장, 대손분개장, 미수채권관리대장 등)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융자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1577-6119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기금	미정
수출보증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08
세제지원	기업 소재 자치구 세무과	

2. 부산광역시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지원내용

① 수출규제 상담 및 피해지원센터 운영(2개소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의)

② 수출입 바로지원센터 운영(일본 오사카 무역사무소 내)

- 허가서류 및 절차지연 피해기업 지원, 통번역서비스 및 현지전문가 자문 제공

③ 특례보증 지원 : 100억 원 규모

④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 지방세 납부 · 징수 등 연장 · 유예(최대1년), 세무조사 연기 등

⑤ 수입선 다변화 지원

- 수입국 다변화 기업 지원사업, 글로벌 소재부품 구매 사절단 파견, 정밀기계류 등 투자유치 IR 추진(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 등)

⑥ 관광산업 지원

- 지역관광사업자 자금 지원(보증한도 5천만 원), 관광업계 동향 상황관리반 운영, 해외시장 다변화 및 국내시장 확대 홍보 · 마케팅

신청방법

› 피해(예상)기업의 신청, 필요시 지방세 감면 등은 직권 조치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긴급 특례보증	혁신경제과	051-888-7692
피해지원센터 운영	투자통상과	051-888-4822
지방세 지원	세정담당관실	051-888-2132

3. 대구광역시

① **(자금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 및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

- 업체별 10억 원 한도, 1년간 이차보전

※ 당해년도 경영안전자금 수혜기업도 업체별 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단, 당해년도 중앙부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은 신청불가)

② **(특별보증)** 대구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지원

▣ 대상기업 : ❶~❸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❶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관광업, 음식업(일식 등), 도소매업 등도 해당)
- ❷ 보증신청접수일 현재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기업
- ❸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의 경우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기업에 한함)

- 업체별 2억 원 한도, 보증료 0.9% 고정료율 적용

③ **(세제지원)**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 26)

- 징수유예 : 지방세의 고지유예 · 분할고지 · 징수유예 ·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기타 지원 :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신청방법

구분	내용
자금 지원 · 특별 보증	(신청장소)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 방문 상담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피해발생사실신고서*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서식 다운로드: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www.ttg.co.kr)-서식자료실 **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규제품목평가서, 규제 대상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 계약 관련 취소여부 확인서류(관광사업체) 등
세제 지원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구 · 군청(세무부서)에 우편이나 팩스 및 방문 신청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징수유예 등 신청서」 등 제출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자금지원 특별보증	죽전지점	053-560-6300
	동지점	053-982-7500
	월배지점	053-639-4343
	범어동지점	053-744-6500
	유통단지지점	053-601-5255
	중앙지점	053-256-0300
지방세제 지원	중구 세무과	053-661-2374
	동구 세무1과	053-662-2374
	서구 세무과	053-663-2373
	남구 세무과	053-664-2375
	북구 세무과	053-665-2374
	수성구 세무1과	053-666-2415
	달서구 세무과	053-667-2372
	달성군 세무과	053-668-2382

4.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 품목의 구매 · 거래 관계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지원대책(내용)

① **(경영안정자금)** 기존 제한기준 적용 배재, 지원율 확대, 기금 상환유예 등 자금애로 해소 업체당 7억 원 이내, 총 500억 원 규모

② **(지방세 감면)**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③ **(특례보증)** 인천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④ **(조례제정)**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⑤ **(산 · 학 · 연 · 관 협업 구축)**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개발을 위한 기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시와 협업을 통한 인프라 조성

⑥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5억 확보, 시생산/시제품 제작 및 원천기술 확보 등 기업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시청 TF상황실 또는 유관기관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032-440-8242~3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032-450-1673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2	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역본부	032-235-6103
인천본부세관	032-452-3632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070-8895-7447
인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32-837-7017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32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032-830-5680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1566-5114

5. 광주광역시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
-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수출 예정기업
  *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또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지원내용

① **(보증)**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보증 지원
  * 보증규모 : 200억 원 내외, 업체당 3억 원 이내

② **(세제지원)**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의거 직접 피해 기업에 지원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1년 기한연장) 세무조사유예 등

③ 청년채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피해 기업에 가점 부여

④ 지역 내 부품소재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부품 소재 분야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강화

신청방법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상담 문의 및 피해 접수 (062-960-2671)

* https://www.sosgepa.or.kr,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특례보증	기업육성과 광주신용보증재단	062-613-3861 062-950-0011
세제지원	세정담당관 (자치구 지방세과)	062-613-2522
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일자리정책관	062-613-3581

6. 대전광역시

1 경영안정자금 및 구매조건 생산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사용 업체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지원내용

①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 은행 협력자금
  *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기간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②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50억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업체당 5억 원 이내, 융자금리 2%내외(분기별 변동금리), 기존 대출금 사용 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 시 최대 1년 상환유예

신청방법

- **(신청장소)**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에 신청(방문 및 온라인 병행)
- **(신청기간)** 2019. 8. 28(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 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③ 공통서류 등
  * 서식 다운로드 :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 홈페이지 (http://www.djbiz.or.kr)

** (예시)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신고필증, 수입실적 증명서, 규제대상 품목 구매실적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자금지원 총괄	대전광역시청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일본수출 규제 피해기업 접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6
자금지원 접수 및 상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2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 · 분할고지 · 징수유예 ·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신청방법

- **(신청장소)**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 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 서류**

* 서식 다운로드 :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및 각 구청 홈페이지

** (예시) 지방세 지원 내용별 신청 사유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문의처

자치단체명	부서명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	042-251-4252
대전광역시 중구	세무과	042-606-6314
대전광역시 서구	세무1과	042-288-28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정과	042-611-2239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042-608-6622

7. 울산광역시

1 일본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운영기간 : '19. 8. 1.(목) ~ 상황 종료 시 까지
- 구성 : (단장) 경제부시장, (상황실장) 혁신산업국장, 4개반
- 임　무
  - 상황관리 총괄반 (화학소재산업과)
    - 비상대책반 운영 및 종합대책 시행
  - 부품 · 소재 연구개발 지원반 (미래신산업과)
    - 지역 소재 · 부품 기업현황 조사, 중앙부처 소재부품 관련 동향 파악
    - 산업별 부품 · 소재 연구개발 기획 · 지원 등
  - 통상 · 산업입지 지원반 (투자교류과)
    - 대체 수입경로 발굴 지원, 해외 현지 및 국내 초청 구매 상담회 개최,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사업 추진 등
  - 금융 · 세재 지원반 (일자리노동과)
    - 지역 기업 피해상황 파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대외경제협력 필요금융 제공

- 운영방안 : 동향관리 및 상황발생시 신속 보고

문의처

비상대책반	부서명	전화번호
상황관리 총괄	화학소재산업과	052-229-7673
부품·소재 연구개발 지원	미래신산업과	052-229-6153
통상·산업입지 지원	투자교류과	052-229-2742
금융·세재 지원	일자리노동과	052-229-2723

2 일본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 구성·운영

(구성) 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

시(8)	세정담당관, 일자리노동과, 중앙벤처기업과, 미래신산업과, 화학소재산업과, 투자교류과, 산업입지과, 지역개발과
유관기관(13)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코트라지원단, 울산세관

(조직) 시, 유관기관으로 역할 분담

센 터 장

울산 광역시	울산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기타 유관기관
• 정부 지원시책, 인·허가 등 안내	• ONE-STOP 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황파악	• 대체 수입경로 발굴 • 수입선 전환 비용 지원	• 피해신고 접수 • 기업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지원	• 특별 세정 지원 • 무역보험 특별 지원 • 대외경제협력 필요금융 제공 • R&D 지원 등

❶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 (기능) 피해기업 원스톱 해결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제공

- 피해사례 접수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계
- 피해기업 지원 : 피해기업 발생시 금융 · 세제 · 자금 신속지원
- 단기 수급애로 지원 : 대체 수입경로 발굴,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
- 관련품목, 일본의 수출제도, 정부 지원시책, 인 · 허가 등 안내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연계

➔ (시행/장소) 8.27.(화)부터 [평일(09~18), 비상시 조정], 울산경제진흥원

➔ (운영방법)

- 상시(5) : 울산경제진흥원 2, 시 1,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1,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1
- 상황발생시 : 해당부서 및 관련 유관기관 참석

➔ 문의처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52-283-7131

3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시책 (울산광역시)

➔ 지원 대상 일본 수출규제 피해(애로) 업체

➔ 지원내용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업지원 사업

- 개발 지원(시제품제작, 특허지원, 인증 · 시험분석비 등)
- 대 · 중 · 소기업 상생협력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수입선 다변화 경로발굴 지원

- 대체 수입 상담 해외 출장 항공료 · 통역비, 기존 일본 수입 운송비와의 차액 물류비, 기술 라이선스료, 해외 전시· 박람회 참관비(대체 수입 조사 및 상담) 지원 등

›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특허 · 인증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신청방법

› 울산시청, 울산TP 방문(유선) 상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화학소재산업	052-229-7673
	울산 TP	052-219-8738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지원 사업(수입선 다변화)	투자교류과	052-229-2742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울산 TP	052-219-8647

4 지방세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으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 간	근거법령
납기 연장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1회 연장, 최대 1년)	지방세 기본법 제26조
징수 유예	부과고지 세목인 재산세(9월 부과) 등에 대하여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 미징수	6개월 이내 (1회 연장, 최대 1년)	지방세 징수법 제25조
체납 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1년 이내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
세무 조사 연기	사업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기곤란한경우	1년 이내	지방세 기본법 제83조
기타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즉시 처리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 신청기간 내 신청서 제출

* 납기연장(기한만료 3일전), 징수유예(징수유예 신청 기간 전), 세무조사연기(세무조사 15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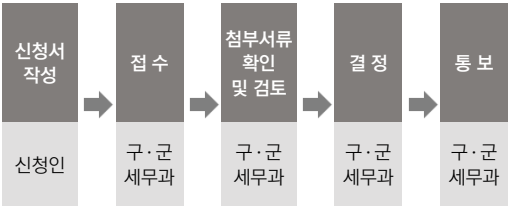

문의처

지원내용	부 서 명	전화번호
지방세 지원	시 세정담당관	052-229-2624
	중구 세무과	052-290-3362
	남구 세무과	052-226-3521
	동구 세무과	052-209-3282
	북구 세무과	052-241-7512
	울주군 세무과	052-204-0522

5 일본 수출규제 관련 특례보증(해드림)

지원 대상

-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기업 지원관련 보증'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300억 원(전국 1.2조 원)

- 백색국가 제외 피해기업 지원 : 60억 원(전국 2천억 원) / 업체별 2억 원 한도
- 경영애로기업 지원 : 190억 원(전국 8천억 원) / 업체별 5천만 원 한도
- 저신용 영세기업 지원 : 50억원(전국 2천억 원) / 업체별 3천만 원 한도

※ 보증요율 : 백색국가 피해기업지원(0.5%), 경영애로·영세기업(0.8%)

※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 시·도) 통해 공급

신청방법

- 전화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각 지점) 방문상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신분증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052-283-8350
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052-283-0101
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	052-281-8100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지점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 2층	052-285-8100

6 2020년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 무역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1,800억 원

- 지원규모 : 1,800억 원(중소기업 1,150, 소상공인 450, 기술 · 경영혁신200)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 원(조선협력업체 3억 원, 수출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 조 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분할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중 선택
  - '19 ~ '21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확대 추진(매년100억 원씩)

* '18년 1,700억 원 → '19년 1,800억 원 → '20년 1,900억 원 → '21년 2,000억 원

신청방법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접수기간 울산경제진흥원 방문접수
- 기술 · 경영혁신 자금 : 연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방문접수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접수기간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선착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울산경제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052-283-7135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052-220-7900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4층	052-226-7820
울산신용보증재단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052-289-2300

7 일본수출규제 대응 첨단화학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배경

- 국내 소재 · 부품 기술 개발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역설계와 부족기술 지원을 통해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화학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 ~ 12월(1년)
- 사업주관 : 한국화학연구원(울산사업본부)
- 사 업 비 : 400백만 원(시 200, 한국화학연구원 200)
- 사업내용 : 선진제품 및 경쟁사 제품 등에 대한 전주기적 분석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첨단화학소재 개발 지원
  ※ 전주기적 분석 : 물리적·화학적 분석,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기술상담
- 추진계획

- 2 ~ 3월 : 지역기업 제품 분석지원 접수
- 4 ~ 12월 : 제품 전주기적 분석 및 솔루션 제공

지원예산 400백만 원(시 200, 한국화학연구원 200)

기대효과

- 소재산업 구조 개편 및 첨단화학소재 경쟁력 제고
- 전주기적 분석지원을 통한 중소 · 중견기업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첨단화학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울산시 화학소재산업과	052-229-7673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융합화학연구본부	052-241-6121

8.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등)' 지원
- **(지방세 지원)**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지원

신청방법

- 담당부서 전화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5
지방세 지원	세정과	044-300-3512

9. 경기도

1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추진배경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추진에 따라,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

  ※ 대책반 구성 : 경기도, 경과원, 경기신보 등 (대책반장 : 경제기획관)

운영계획

- **(설치운영)** '19. 7. 4. ~ 상황종료시 까지
- **(위 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상담센터 내
- **(추진절차)**

피해업체 애로사항 신청	→	애로사항 파악	→	피해기업 현장 조사	→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도내 기업		피해 신고센터 (전화031-259-6119, FAX 259-6244, sos119@gbsa.or.kr		경기도, 경과원, 경기신보 등		관련기관 합동

- **(피해기업 현장조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부품소재 납품기업, 완제품 수요기업)의 피해내용 및 애로사항 상담
  - **(애로해결)** 파악된 애로내용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 대응 및 해결

활동계획

- 피해신고사항 발생 시 현장조사, 상담, 자금지원 등 조치
- 제도개선사항 발굴 정책(정부) 건의 등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5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112

2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관련 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1,500억 원 자금 · 보증지원
  - 시설투자 1,000억 원, 운전자금 500억 원
- **(지원한도)** 업체당 시설투자 30억 원, 운전자금 13억 원 이내 지원
- **(세부내용)**
  - 시설투자
    - 지원규모 : 1,000억 원/ 업체당 최대 30억 원
    - 지원조건 : 보증비율 90%, 보증료 1%
    - 상환기간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규 시설자금(기계, 설비)에 한함
  - 운전자금
    - 지원규모 : 500억 원/ 업체당 최대 13억 원
    - 지원조건 : 보증비율 90%, 보증료 1%
    - 상환기간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신규 운전자금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경기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문의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	특화기업 지원과	031-8030-3022
경기 신용보증재단	-	1577-5900

3 소재부품 펀드 조성

지원 대상

- 중소 · 벤처 소재부품장비 관련기업 및 부품소재 응용 신성장분야, 유관 ICT 등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0억 원 이상의 소재부품 관련 펀드를 조성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투자
  - 첨단 부품 · 소재를 개발 중인 중소 · 벤처기업 집중 투자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

※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등은 펀드(투자조합) 결성 후 확정/ 개별 기업 신청 불요

추진일정

- 2020년 상반기 : 운용사 모집 · 선정, 기업 투자진행
- 2020년 하반기 : 소재부품 펀드 조성

문의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22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031-259-6488

4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중소/중견 부품 · 소재 · 장비 제조기업
  *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센서, 4차산업(5G, AI, IoT, 로봇) 분야
-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사업목적)** 핵심부품 및 소재의 연구 및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및 글로벌 기업에 개발된 제품 공급을 통해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
- **(R&D)** 부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기업당 1억 원 이내
  * 기술개발 실현가능성 및 외국투자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서류/발표심사) 선발
- **(컨설팅)**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IR 자료 작성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공고를 통해 신청하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발
  * '20. 2월 중 공고 예정
  *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및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글로벌기업연계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031-8008 -2774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00-3111

5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연구지원 사업

추진배경

-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역량 강화
  -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중심의 산학연 연계(대학, 도내 기업, 연구기관 등) 사업

사업단 설립(안)

- 운영기간 : '20.10월~'22.12월(3년간)
- 소요예산 : 300억 원(연간 100억 원)
- 주요내용
  - 수요기업 중심, 대 · 중소기업 상생 R&D과제 발굴
  - 사업 주체(산 · 학 · 연)간 신뢰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관리
  - 수요기업 자율적 사업경과 평가 및 상생적 지식재산(IP)전략 지원

추진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센터】
• 구성 : 9인(산·학·연분야별대표) –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소위원회(3인) 구성 • 기능 : 과제 발굴·기획, 선정·관리, 평가 – 운영관리방안, 산업기밀 관리 및 지식재산(IP) 전략, 수요-공급 연계 강화 전략 마련 – 참여기관 간 기술공유·협력·기술보호 체계 구축(MOU 체결)	• 구성 : 28인(3실 1팀) – 개발지원실, 실증지원실, 분석지원실, 운영지원팀 • 기능 : 전문화된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과제별 전담연구인력 지정, 연구분석실 및 공용연구실 운영 등 기술개발 상시지원 – 산업기밀관리, 품질고도화, 신뢰성확보, 실증화, 기술이전 등 과제수행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031-8008-4006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기술기획팀	031-888-9044

6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 기업 및 대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운영 중인 기업 /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내용

- 예산규모 : 50억 원(도비)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약 37개 과제
  - 지원내용 : 과제 당 150백만 원 이내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

신청방법

- '20년 상반기(2월 예정) 중 시행계획 공고 예정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문의처

지원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031-8008-4635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031-776-4852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연구전략팀	031-888-9844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031-500-3035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031-539-5041

10. 강원도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 품목을 직접 수입, 가공 처리하는 기업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생산 · 개발 등 관련 분야 기업
- 수출규제에 따른 직간접 영향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및 기업

지원내용

① 긴급 경영안정 운전자금 지원 : 지원액 60억 원(기업당 8억 원 한도)

② 만기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지원 : 4년 → 5년, 이차보전 1년 추가

③ 특별 신용보증 지원 : 기업당 1.4억 원 한도

④ 수출 판로 다변화 지원 : 판촉 · 홍보행사,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추진

⑤ 공장 신 · 증설 인허가 기간 단축 : 대체품 생산 · 개발 등 인허가 신속처리

⑥ 세제 지원 :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신고 납부기한 연장(6개월 내) 등

신청방법

- 강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지원센터 신청(방문, 우편, 이메일)
  - 운영기간 : '19. 8월 ~ 상황 종료시

- 운영부서
  - 총 괄 : 도 경제진흥과 *센터장(경제진흥과장), 운영반장(기업지원담당)
  - 지 원 : 시군 기업지원 부서, 도 경제진흥원

문의처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강원도청 경제진흥과	033-249-2753	pino@korea.kr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749-3314	dslee@gwba.or.kr

* 시군 기업지원부서, 중소벤처기업청·한국무역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OTRA·산업단지공단 등의 강원지역본부를 통해서도 가능

11. 충청북도

1 소재·부품기술 R&D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충청북도 소재 ·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2020. 2. ~ 2021. 2.
- 사 업 비 : 37억 원(도비 30, 시군비 7)
- 지원 대상 :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분야 : 주요 5대 산업 소재부품 분야 지원 (화학 · 바이오, 기계, 전자 · 반도체, 플라스틱, 철강 · 알루미늄)

사업내용

- 선정기업 : 12개 기업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3억 원 이내 ※ 기업 자부담(20~30%)
- 성과관리 : 기술개발 정량성과* 1건 제출 의무화
  * 정량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국가공인 인증 및 논문 등
- 지원분야 :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5대 산업분야*이며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과제
  * 5대 산업분야 : ①화학 · 바이오, ②기계, ③전기전자·반도체, ④플라스틱, ⑤철강·알루미늄

› 신청자격 및 사업비 부담 비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

구 분	도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현금)
중소기업	사업비의 80%이하	사업비의 20%이하	사업비의 50%이하
중견기업	사업비의 70%이하	사업비의 30%이하	사업비의 50%이하

※ 대기업은 주관기업으로 수행 불가하나 참여기관으로 수행 가능

➔ 문의처 산업육성과 ☎ 043-220-8482

12. 충청남도

1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

사업개요

-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아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억 원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700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300억 원
- 지원 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
  - 직접수입기업, 간접수입기업 등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제조업체(피해 증빙서류 제출)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3억원 이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5억 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신청접수 :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담보 및 신용대출)

- 희망 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 확인 → 시 · 군(기업지원과 · 지역경제과) 신청서 제출 → 도(소상공기업과) 융자추천 승인 → 은행 대출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보증서 발급 통한 대출)

- 신보 · 기보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신보 · 기보에서 도에 융자추천 승인 요청 → 도에서 융자추천 승인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

문의처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 041-635-2223)

2 충남TP 이노카페 연계 R&D기업 지원창구 운영

사업개요

› **(지원 대상)**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및 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R&D 기획 등 역량강화가 필요한 기업

- 전문위원상담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경영, 마케팅, 기술 등) 및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통한 他 사업 연계 지원

지원내용

› 상담 분야 : 경영, 마케팅, 기술

전문 분야	전문위원	상담 가능 분야
경영	임채훈	• 자금조달, R&D지원, 조직관리 • 경영일반, IPO 및 투자유치 등
마케팅	이근배	• 수출전략 수립, 무역실무 • 타킷수출시장 추천, 해외인증 등
기술	이근호	• 현장애로기술, 경영전략 • 생산관리, 정보화, 창업 등

› R&D 기획 컨설팅 : 특허분석, 산업환경분석, 종합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지원계획 공고(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지원 대상 선정 심의 → 대상기업 확정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R&D기업 지원창구 운영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041-635-3926
	충남TP 기업지원단	041-589-0634
	충남TP 미래산업기획연구단	041-589-0171

3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구축

➔ (배경) 중소기업 R&D활동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사업으로 추진

➔ (추진일정) 사업홍보(2월), 공모 · 선정(3월), 과제지원(4~12월)

- 사업수행 : (주관) TP+산학연 등 혁신기관
- 대상 : 도내 소재 · 부품 · 장비 영위 중소기업
- 사업비('20년 본예산) : 700백만 원(도비)
- 지원기간 : 2020.1 ~ 2020.12
- 지원내용 : 산학연 공동긴급 R&D지원, 유망제품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기획 컨설팅 지원, 기술경영 애로지원

➔ 세부 지원내용

1) 산학연 공동 긴급 R&D 지원

-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급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1년 단기 R&D 지원, 3개사(업체 당 1억 원)
- **(지원방안)** 산학연 공동R&D 컨소시엄 구성으로 연구개발 수행

2) 유망제품 상품경쟁력 강화지원

- **(지원 대상)** 신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매출액 발생가능 기업
- **(지원내용)** 비R&D패키지 지원, 최대 3개 프로그램 구성운영
- **(지원규모)** 4개사(업체 당 25백만 원)
- **(지원방안)**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매칭 지원을 통해 사업화 지원

3) 과제기획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정부 공모사업 참여희망 기업
- **(지원내용)** 공모과제 기획 및 기술 · 경영 전략 수립
- **(지원규모)** 7개사(업체 당 46백만 원)
- **(지원방안)** 전문가 매칭을 통한 해소 지원

4) 기술·경영애로 지원

- **(지원 대상)** 당면한 기업애로가 즉시 지원으로 해소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기술지도, 특허, 인증 등 비R&D기술지원
- **(지원규모)** 7개사(업체 당 약9백만 원 내외)
- **(지원방안)** 단기간 내 해결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매칭 지원

문의처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 041-635-3926)

4 기타,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계획

1) 자동차 융·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 **(목적)** 정보 및 수출역량이 부족하여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거래선 다변화 촉진
- 사업수행 : (주관) TP, (참여) 수출전문기관, (대상) 자동차부품기업(소재부품장비기업 포함)
- 사업비('20) : 500백만 원(도비) ▪ 지원기간 : 2020.1 ~ 2020. 1
- 지원내용 : 바이어 DB구축 및 정보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지원, 무역실무 지원, 홍보 및 광고지원

2)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 **(목적)**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해 유망 품목 종합기술지원
- 사업수행 : (주관) TP, (대상) 디스플레이 소재 · 부품 · 장비업체
- 사업비('20) : 500백만 원(도비) ▪ 지원기간 : 2020.1 ~ 2020. 12
- 지원내용 : 디스플레이산업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유망품목)** OLED, Flexible, 소재부품장비 등
  - 고용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지원, 전시회, 바이어 초청

➔ 문의처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 041-635-3926)

13. 전라북도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금융지원)**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 융자금 상환 유예조치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 원까지 / 총 150억 원 규모
- **(지방세지원)**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부지원
- **(수출판로지원)** 수출상담회, 전북형 수출바우처사업 등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 **(R&D지원)**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개발(R&D) 지원(3억 원)
  - 대상 : 도내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기업 및 대학 · 연구기관
  -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대 정부 R&D 기획,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기술 개발 지원(7건 이내) 등

신청방법

(금융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피해사실 입증서류**

(지방세지원) 전라북도 14개 시 · 군 신청

- 구비서류 : 피해사실 입증서류**

* 서식 다운로드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jbba.kr) 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일본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 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수출판로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

- 신청방법 : 지원계획 공고(전라북도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공고)→ 지원 대상 선정 심의 → 대상기업 · 기관 확정

(R&D지원)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지원계획 공고(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지원 대상 선정 심의 → 대상기업 · 기관 확정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금융지원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063)711-2050
지방세지원	도청 세정과	063)280-2315
수출판로지원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3
R&D지원	도청 혁신성장정책과 (전북TP 과학기술진흥센터)	063)280-3222 063)219-2282

14. 전라남도

지원 대상 : 日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 기업

- 對日 수출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3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日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

지원내용

- **(대체 시장 발굴)**
  - **(특별 시장개척단 파견)** 간접피해 수출기업 대상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 추진
- **(금융 지원)**
  - **(담보한계 특례보증)** 담보부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여 수출 유지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500억 원, 기업당 3~5억 원, 2년 거치 일시상환,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1년)
  - **(농어촌진흥기금)** 개인 1억, 법인 2억 / 이율 1%, 2년 거치 일시상환
  -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업인 · 법인 2억 / 이율 1%, 2년 거치 일시상환
- **(수출보험료 추가 지원)** 일본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 한도 확대(300 → 500만 원)
- **(지방세 지원)**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1년, 지방세 징수 유예 1년, 세무조사 연기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문의처에 문의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대체 시장 발굴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긴급경영안정자금	전라남도중소기업 진흥원	061-288-3831~2
농어촌 진흥기금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31
녹색축산 육성기금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061-286-6523
수출보험료 추가 지원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4
지방세 징수 유예	전라남도 세정과	061-286-3621

15. 경상북도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핵심 소재 · 부품 제품화 및 상용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직 · 간접 수입기업)
*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시 지원 대상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
②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 ·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③ 일본 수입 소재 · 부품의 기술개발 계획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접수기간)** 2019. 9. 17. ~ 2020. 12. 20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3%)를 1년간 지원
- **(융자한도)** 총1,000억원(은행협력자금), 기업당 10억원이내
- **(지원절차)** 신청 · 접수(시 · 군) → 융자추천 결정(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심사 · 대출실행(협력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도→은행)

신청방법

- **(접수처)** 경북도내 관할 시 · 군청 자금지원 부서
-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등
  * 세부사항은 '19. 9월 이후 홈페이지(www.gb.go.kr)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ask16707072@korea.kr

문의처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자금지원 총괄	경북도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1
접수상담 및 안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054-470-8570

16. 제주특별자치도

1 일본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구성 배경

-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및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TF 운영을 대책본부 체계로 확대 구성, 제주기업 수출피해 방지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8개 분야 체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운영기간 : '19. 8. 14.(수) ~ 상황 종료 시 까지
- 구성 : (본부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8개 분야 대책본부
- 주요역할 :
  - 상황전개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신속 실행
  - 각 분야별 수출기업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체계 운영(수시)
  - 중앙부처, 유관기관, 기업 간 긴밀한 공조 대응체계 구축
- 운영방안 : 동향관리 및 상황발생시 신속 보고

문의처

비상대책반	부서명	전화번호
상황관리 총괄	통상물류과	064-710-2621
규제개혁 분야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1
세제 분야	세정담당관	064-710-6882
국제교류 분야	평화대외협력과	064-710-6262
관광 분야	관광정책과	064-710-3312
소재부품 분야	미래전략과	064-710-8881
농축산 분야	식품원예과	064-710-3132
수산 분야	수산정책과	064-710-3248

2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도 전체 수출기업 수출보험 자동가입

배경

- 일본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내 모든 수출기업 대상 수출보험 자동가입 추진을 통한 무역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 수출기업

지원내용

- 100만 불 이하 모든 수출기업이 가입절차 없이 자동 수출보험 가입 및 보험혜택 적용
  * 수출규모에 따라 보상한도 차등지원('18년 기준 250여 도 전체 수출기업 적용)
  (10만 불 초과 수출기업 – 보상한도 10만 불, 10만 불 이하 수출기업 – 보상한도 5만 불)

문의처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무역보험 자동가입	통상물류과	064-710-2628

3 일본수출규제 직접피해 기업 세제(지방세) 지원

지원 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기업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신청방법

› **(신청장소)** 시 · 도 세무부서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문의처

분야	부서명	전화번호
세제 지원분야	세정담당관	064-710-6882

참고 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현장지원반 핫라인

중앙행정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
산업통상 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총괄과	044-203-4911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 정책관	044-200-2222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044-215-2732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044-202-6853
중소벤처 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	042-481-6816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772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3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1
특허청	산업재산창출 전략과	042-481-8184
행정안전부	일자리경제과	044-205-3904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12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044-201-3658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50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4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800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	032-450-1132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00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2-210-0062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033-260-1600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043-230-5300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	063-210-6482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055-268-2511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담당부서	사 무 실
서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02-2133-5214
부산	일자리경제실 신경제과	051-888-7712
대구	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235
인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032-440-4281
광주	일자리경제실 기업육성과	062-613-3861
대전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울산	혁신산업국 화학소재산업과	052-229-7670
세종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044-300-4142
경기	경제기획관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0
강원	글로벌투자통상국 일본구미주통상과	033-249-2093
충북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043-220-3484
충남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전북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063-280-3225
전남	경제에너지국 혁신경제과	061-286-3840
경북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054-880-2734
경남	산업혁신국 투자통상과	055-211-3284
제주	일자리경제통상국 통상물류과	064-710-2626

협회·단체 등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02-6050-3381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2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3094
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본부	02-3270-7328
한국무역협회(FTA 종합지원센터)	정책협력실	02-6000-5202
KOTRA	신북방팀	02-3460-7656
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팀	070-8895-7841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 사업본부	02-399-6584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분석실	02-6000-6432
철강협회	기획홍보실	02-559-3512
기계산업진흥회	통상비즈니스센터	02-369-7842
반도체산업협회	통상협력팀	02-570-5210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	02-3668-6151
전자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	02-6388-6170
전지산업협회	기획조사팀	02-3461-9408
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	02-3660-1882
로봇산업협회	전략기획팀	02-780-3144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경영전략본부	02-3014-5708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대외사업부	02-2088-7257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책기획팀	02-2112-8067

금융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
금감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6번 선택 02-3145-8405 02-3145-8419
	부산울산지원	051-606-1734
	대구경북지원	053-760-4008
	광주전남지원	062-606-1635
	대전충남지원	042-479-5116
	인천지원	032-715-4808
	경남지원	055-716-2328
	제주지원	064-746-4202
	전북지원	063-250-5004
	강원지원	033-250-2804
	충북지원	043-857-9103
	강릉지원	033-642-1905
산업은행	신산업금융실	02-787-5602 02-787-5624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3779-6253
기업은행	기업개선부	02-729-6983 02-6322-5087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51 055-751-954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보증기획부	042-480-4030 042-480-4039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053-430-4496 053-430-4497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영실	051-606-7475 051-606-7457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농협은행	여신기획부	02-2080-7617 02-2014-1574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02-2151-2444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02-2002-4833 02-2002-5349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02-2002-1551 02-2002-1622
국민은행	기업여신심사부	02-2073-3804
SC은행	기업여신심사부	02-3702-4412 02-3702-4152
씨티은행	리스크기획부	02-3455-2827 02-3455-2866
수협은행	기업그룹	02-2240-0253 02-2240-0256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051-620-3411 051-620-3438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062-239-6540 062-239-6541
전북은행	영업추진부	063-250-7335 063-250-7632
경남은행	여신지원본부	055-290-8616 055-290-8675
대구은행	여신심사부	053-740-2301 053-740-2398
제주은행	여신기획부	064-720-0175

참고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연락처

지역본(지)부(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소재지)	전 화
서울(금천구)	02)2106-7442	충남(천안시)	041)589-4545	경북(구미시)	054)476-9340
서울동남부(서초구)	02)2023-4314	충북(청주시)	043)230-6800	경북동부(포항시)	054)288-7350
서울북부(중구)	02)769-6419	충북북부(충주시)	043)841-3600	경북남부(경산시)	053)603-3325
인천(연수구)	032)837-7041	광주(광주시)	062)600-3000	부산(사상구)	051)630-7400
인천서부(서구)	032)560-2360	전북(전주시)	063)210-9923	부산동부(해운대구)	051)745-5926
경기(수원시)	031)260-4900	전북서부(군산시)	063)460-9800	울산(울산시)	052)703-1100
경기동부(성남시)	031)760-9000	전남(무안군)	061)280-8031	경남(창원시)	055)270-9753
경기서부(안산시)	031)783-0600	전남동부(순천시)	061)729-1556	경남동부(김해시)	055)310-6600
경기남부(화성시)	개소예정	강원(춘천시)	033)269-6900	경남서부(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고양시)	031)920-6700	강원영동(강릉시)	033)655-9374	제주(제주시)	064)754-5154
대전세종(대전시)	042)281-3731	대구(대구시)	053)606-84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참고 3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하는 소재 · 부품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 및 가공방법, 해당 소재 · 부품을 사용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 새로운 유형의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정비 후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상 업종'으로 변경예정